수출초보업체를 위한

임산물 수출가이드북

2024.12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장 수출절차 ····· 03

Ⅰ 한눈에 보는 수출가이드 ····· 04

Ⅱ 수출절차 ····· 05

Ⅲ 사후관리 ····· 14

Ⅳ 필요서류 ····· 16

2장 국가별 임산물 수출 매뉴얼 ····· **20**

Ⅰ 미국 ····· 21

Ⅱ 중국 ····· 50

Ⅲ 일본 ····· 72

Ⅳ 베트남 ····· 90

3장 수출지원사업 소개 ····· **103**

Ⅰ 정부지원사업 ····· 104

*** 참고문헌** ····· **116**

1장 수출절차

I. 한눈에 보는 수출가이드

II. 수출절차

1. 한국에서 수출절차
2. 현지에서 수입절차
3. 결제/운송/통관/보험

III. 사후관리

IV. 필요서류

Ⅰ.한눈에 보이는

수출가이드

Ⅰ. 시장조사

1. 타겟국가선정

2. 시장조사

3. 신용조사

Ⅱ. 수출기반

7. 무역보험

6. 디자인 개발

5. 해외규격인증

4. 홍보물 준비

Ⅲ. 시장개척

8. 바이어 발굴

9. 상담회 참가

10. 전시회 참가

11. SNS마케팅

Ⅳ. 수출계약

16.대금결제

15. 물품운송

14. 수출신고

13. 계약체결

12. 거래협상

Ⅴ. 사후관리

17. 영세율적용

18. FTA활용

19. 관세환급

II 수출절차

1. 한국에서 수출절차

한국에서 임산물 수출은 수출계약부터 수출신고까지 총 6단계로 이뤄지며,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한국에서 수출절차

2. 현지에서 수입절차

현지에서의 수입절차는 화물의 도착부터 반출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짐.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현지에서 수입절차

3. 결제/운송/통관/보험

1) 가격 및 결제조건

(1) 수출가격 책정

환율 변동 등 장기적인 가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 산출과 가격책정방식 유지가 필요함. 환율은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약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바이어의 제품 옵션 변경 요구나 수량에 따른 할인 요구 등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권장됨

[표] 수출원가계산

구분		내용
제조원가		원부자재 구매비용, 단위당 생산비용(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 수출품 검사비용, 수출품 포장비용 등
+	물류비용	내륙운송료, 운송비(해상/항공), 보험료(필요시), 창고료
+	금융비용	환가료, 은행 수수료 등
+	행정비용	수출통관 수수료, 승인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등
+	기타비용	에이전트 수수료(필요시), 기타 수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이윤	수출자의 적정이윤

(2) 대금 결제 방식 종류

[표] 대금 결제 방식 종류

구분	내용
송금 (T/T, M/T, D/D)	수입자가 수출자 외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전체 수출거래의 약 70% 차지)
추심 (Collection)	수출자와 수입자간 각자의 거래은행을 통한 대금 전달 방식으로, 대금 지급 후 서류가 인도되는 DP와 서류 인도 후 대금이 지급되는 DA로 구분됨
신용장 (Letter of Credit)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 통해 수출자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 후 신용장 요구 서류 제출 후 대금 수령하는 방식
팩토링 (Factoring)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출채권을 팩토링회사 (한국수출입은행* 등)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1]으로 매입하는 방식
포페이팅 (Forfaiting)	해외 수입국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보증과 관련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포페이터(한국수출입은행 등)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

1)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3) 결제 방식별 거래 안정성

일반적으로 선적 전 대금 결제는 수출자에게, 선적 후 결제는 수입자에게 유리함. 결제 방식은 바이어의 신용도, 거래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협상되어야 하며, 초기에 전액 선적 전 결제 방식 이후 장기적으로 신용 형성 시 유연화를 고려하는 방안이 권장됨

[표] 결제 방식별 거래 안정성

수출자		수입자
낮은 안전도(협상력 小)		높은 선호도(협상력 大)
대금 미회수 위험	**사후송금**	무위험
환어음 인수후 미결제 위험	**D/A**	비용 無, 기한이익 향유
미결제시 상품처분 위험	**D/P**	비용 無, 즉시결제
팩터보증, 고비용·마켓클레임	**팩토링**	비용 無, 신용한도 제한
은행보증, 서류상 하자 위험	**L/C**	비용부담, 사기 등 한계성 폐단
소구권차단, 비교적 안전	**포페이팅**	고비용, 번잡
무위험	**사전송금**	상품 미인수 위험
높은 안전도(협상력 大)		낮은 선호도(협상력 小)

(4) 결제 통화

결제 통화 선정에 대한 법률적 제약은 없으며, 바이어와의 협의로 결정됨. 결제 당시 환율과 통화의 안정성, 교환성 및 유동성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달러(USD), 유로(EUR), 엔화(JPY)가 결제 통화로 사용됨

(5) 계약서 작성

법적으로 지정된 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상품명, 가격, 수량 등 기본적인 내용과 선적 조건, 클레임 조항, 중재 조항 등의 부가 조항이 포함된 서류(오퍼시트, 인보이스, 구매주문서 등)가 계약서로 간주됨.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표준 계약 서식을 제공하며, 법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계약 검토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www.9988law.com)

2) 운송

(1) 운송조건 설정

운송조건 결정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국제거래에서 운송 과정에서의 비용과 위험의 한계 범위를 결정한 인코텀즈(Incoterms)가 사용됨. 개정은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최신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짐. 수출자와 수입자 각자의 책임 범위 분담에 따라 총 11가지의 방식으로 분류되며, 주로 바이어의 선호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운송조건이 결정됨. 이러한 협상에는 바이어의 신용도, 거래액 규모 등이 크게 반영됨

[표] Incoterms® 2020(대표적인 5가지)

운송조건		의무 구분*						
		수출자	내륙운송	수출항	해상운송	수입항	내륙운송	수입자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	○	○	○	○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	●	○	○	○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	●	●	○	○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	●	●	●	●	●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	●	●	●	●	●

* ●: 수출자 의무, ○: 수입자 의무

(2) 운송 진행 과정

수입항까지의 운행 일정 및 견적 확인 → 선박확보 → 수출신고 → 제품출고 → 선적 → B/L 발행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운행 일정 확인부터 B/L 발행까지 포워더(운송주선인)의 대행을 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3) 선적방식

선적방식은 FCL과 LCL로 나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1개 기업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일정 준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른 상품으로 인한 손상이나 위험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선적 물량이 확보되어야 함

(나) LCL(Less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합산 및 분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운송 소요기간이 비교적 길고, 단위당 운송비용이 높음. 선적 물량이 하나의 컨테이너 용량보다 적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됨

(4) 운송비

운송비는 해상운송의 경우 부피(CBM, 가로×세로×높이) 또는 운임톤(RT) 중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항공운송의 경우 총 중량과 부피중량 [(가로×세로×높이)/6000cm]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됨. 주로 화물트럭을 이용한 내륙운송은 제조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소요되는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 부대비용으로는 화물취급 수수료, B/L 발행비, 수출신고 수수료, 항만이용료 등이 발생함. 쉬핑가제트(www.ksg.co.kr)를 통해 포워더 검색과 견적 요청이 가능함

[표] 해상 수출 비용 견적 예시

DESCRIPTION			Unit Price	Amount
국내 비용	해상운임	O/FRT	$65/CBM	₩234,000
	LOCAL CHARGE	AMS	$25.00	₩30,000
		CFS	₩10,165/CBM	₩30,495
		THC	₩5,500/CBM	₩16,500
		Wharfage	₩203/CBM	₩609
		Document Fee	PER B/L	₩40,000
		내륙 운송료	양재-부산	₩150,000
현지 비용	DAP CHARGE		$635.00	₩762,000
총 비용				₩1,263,604

[표] 항공 수출 비용 견적 예시

DESCRIPTION			Unit Price	Amount
국내 비용	항공운임	A/FRT	₩4,100/KG	₩1,984,400
		SCC	₩130/KG	₩62,920
	LOCAL CHARGE	AIRPORT H/C	PER AWB	₩25,000
		THC	₩30/KG	₩14,520
		내륙 운송료	양재-인천	₩100,000
현지 비용	DAP CHARGE		$495.00	₩594,000
총 비용				₩2,780,840

(5) 물류운송 기본용어

[표] 물류운송 기본용어

용어	내용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시간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시간
콘솔(Consolidation)	여러 회사의 LCL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모으는 작업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B/L없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LC 개설은행에서 보증하는 서류
AWB(Airway Bill)	항공운송장
노미(Nomination)	FOB 거래에서 수입자가 선사(항공사) 지명하는 것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CY(Container Yard)	FCL 화물이 선적 전에 대기하는 곳
CFS(Container Freight Stantion)	컨테이너 화물 집합장소, LCL 화물을 혼합/분배하는 곳
CFS Charge	LCL 화물에 부과되는 수수료
VGM(Verified Gross Volume)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제(선적전 중량 통지 의무)
FSC(Fuel Surcharge)	유류할증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항구 사용료
Wharfage	부두 사용료
CCF(Container Cleaning Fee)	컨테이너 청소비용
Document Fee	B/L 발행비용
Custom Fee	수출신고 대행 비용

3) 통관

(1) 수출통관 과정

기업	기업 / 관세사	세관	세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서류 준비	수출신고서 작성, 세관 제출	수출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 (수출전 검사)*	수출신고필증 교부

*대부분 수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나, 수출전 검사 시행 시 세관과 기업이 물품검사 시행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여부 및 '전략물자 대상 물품' 여부 사전확인 필요

(2) 수출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번호와 연결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거래처의 신고가 필요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가 수출 물품의 소재지 담당 세관에 신고해야 함. 관세사의 경우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3) HS코드

HS코드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개발 및 운영 중임.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HSK)는 10자리까지 사용함. 개별 품목의 HS코드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이나 관세사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4) 보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수출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기관과 은행,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보험과 지원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표] 보험 종류(한국무역보험공사)

구분	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자가 단기(수출대금 결제 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보상
단기수출보험 (포페이팅)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대금 미회수, 수입국검역, 클레임비용)을 한 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 맞춤 상품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수입자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보상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 중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환변동보험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시 환율 변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헤지(Hedge)하는 상품
중장기수출보험 (선적전)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 보상

[표] 보험료 지원사업(한국무역보험공사)

구분	기관
유관기관 주관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무역협회 • 산림조합중앙회
시중은행 주관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지자체 주관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 도·시군 지자체

Ⅲ 사후관리

1. 사후관리

1) 영세율 적용

(1) 수출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자에게 공급받아 수출한 제품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2)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이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UtradeHUB)를 통해 전자 발급이 가능함. 이 경우 간접수출로서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수급사업자(제조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 시 원사업자(수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

2) FTA 활용

(1) FTA 활용

2024년 12월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 협정이 체결·발효되어 있으며, FTA 체결국 수입자는 우대세율 적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우대세율 적용에는 해당 FTA의 '수입국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음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상공회의소, 세관)을 통해 발급 가능함. 필요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소명서, 원·부자재명세서 등 해당 FTA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음

(가) 자율발급 국가: 미국, EU,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등(국가별 권고 서식 활용)

(나) 기관발급 국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협정별 규정 서식 활용)

3) 관세환급

수출품의 경우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함. 이러한 제도는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조자가 세관에 신청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세환급의 방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표] 관세환급 방식 구분

<table>
<tr><th colspan="3">개별환급</th><th colspan="3">간이정액환급</th></tr>
<tr><th>적용대상</th><th>대상품목</th><th>제출서류</th><th>적용대상</th><th>대상품목</th><th>제출서류</th></tr>
<tr><td rowspan="3">모든
수출기업</td><td rowspan="3">모든
수출품목</td><td>수출사실
확인서류</td><td rowspan="3">직전 2년간
연 환급액
8억 원 이하
업체</td><td rowspan="3">간이정액
환급률표
게기
수출품목</td><td rowspan="3">수출사실
확인서류</td></tr>
<tr><td>납부세액
증명서류</td></tr>
<tr><td>소요량계산서</td></tr>
<tr><td colspan="3">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td><td colspan="3">품목당 환급액이 지정되어 절차가 간소하며,
자동환급 또한 신청 가능함</td></tr>
</table>

Ⅳ 필요서류

1. 무역서식

1)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협상 단계에서 바이어에게 제시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가격, 결제조건, 운송사항을 표시한 견적

[표] 견적송장 구성

PROFORMA INVOICE				
(수취인 정보)			(주문번호 및 주문일자)	
Item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Payment				
Shipment				
Shipping Port/Destination				
Origin				
Validity				
Inspection				
Remarks				

2)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

물품의 명세 및 가격 조건을 주 내용으로 매입/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대한 확약서

[표] 물품매도 확약서 구성

OFFER SHEET				
(문서 개요)				
Item No.	Commodity & Description	Unit	Quantity	Amount
Origin				
Packing				
Shipment				
Shipping Fort				
Inspection				
Destination				
Payment				
Validity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거래물품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주로 대금청구서 및 바이어측 과세 증명자료로 활용됨

[표] 상업송장 구성

COMMERCIAL INVOICE				
Shipper/Seller		Invoice No. & Date		
For Account & Risk of Messrs		L/C No. & Date		
		L/C Issuing Bank		
Notify Party		Remarks		
Port of Loading	Final Destination	Payment Terms		
Carrier	Sailing on or about	Price Term		
Item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4) 포장명세서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목록으로, 상업송장과 동일하게 물품명세 및 규격 단위가 기재되어야 함

[표] 포장명세서 구성

PACKING LIST					
Seller		Invoice No. & Date			
Consignee		Buyer			
Departure Date		Other Reference (e.g. Origin)			
Vessel/Flight					
Destination					
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	Description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	Measurement

5)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으로,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을 당시 수령증으로 기능함

[표] 선하증권 구성

<table>
<tr><th colspan="6">Bill of Lading</th></tr>
<tr><td colspan="2">Shipper/Exporter</td><td></td><td colspan="2">B/L No.</td><td></td></tr>
<tr><td colspan="2">Consignee</td><td colspan="4" rowspan="3"></td></tr>
<tr><td colspan="2">Notify Party</td></tr>
<tr><td colspan="2">Pre-Carriage by</td><td>Place of Receipt</td></tr>
<tr><td>Ocean Vessel</td><td>Voyage No.</td><td>Flag</td><td colspan="3">Place of Delivery</td></tr>
<tr><td>Port of Loading</td><td>Port of Discharge</td><td colspan="4">Final Destination</td></tr>
<tr><td>Container No.
Seal No.</td><td>No & Kind of Pkg
or Container</td><td>Description</td><td>Gross
Weight</td><td colspan="2">Measurement</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2. 증명서 및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서식은 각 FTA 협정마다 상이함. 각 FTA마다 요구되는 서식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함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2)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국의 우려 검역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음을 증명함. 2022년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음

3)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생산, 관리, 유통 중임을 증명함

4)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며,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함

5)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됨을 증명함

6)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함

2장 국가별 임산물 수출 매뉴얼

I. 미국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 21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 25
   2) 감 …… 28
   3) 표고버섯 …… 34
   4) 산양삼 …… 39
   5) 목재 …… 43

II. 중국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 50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 53
   2) 감 …… 55
   3) 산양삼 …… 58
   4) 조경수·분재 …… 63

III. 일본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 72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 75
   2) 감 …… 78
   3) 대추 …… 80
   4) 표고버섯 …… 83
   5) 산양삼 …… 86

IV. 베트남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 90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 95
   2) 감 …… 97
   3) 표고버섯 …… 99
   4) 산양삼 …… 101

Ⅰ. 미국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1) 요약

對미국
수출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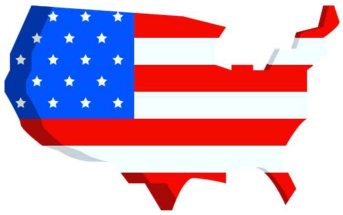

STEP 01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 내 용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규정 사전 파악

STEP 02 FDA 시설등록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미국에서 유통·판매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시설
- 방 법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특 징 2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매 짝수년도에 갱신 가능

STEP 03 수출신고 후 운송수단 선적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 내 용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 특 징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STEP 04 적하목록 사전제출
- 주 체 미국 운송·수입업체
- 방 법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하목록 제출
- 제출내용 화물에 대한 정보, 송하인 및 수하인 인적사항, 운송수단 및 항해에 대한 정보

STEP 05 수입식품 사전통지
- 주 체 미국 수입업체
- 방 법 수입식품은 화물 도착 15일 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통지시스템(PNSI)를 통해 제출
- 제출내용 도착항, 담당자 정보, 수출입업체 정보, 제품 정보

STEP 06 수입자 보안신고
- 주 체 미국 운송·수입업체
- 방 법 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 관세국보안청에 수입자 보안신고(ISF) 제출
- 제출내용 미국 수입업체 : 제조사, 공급자, 판매자, 구매자, 수취인 등 10개 정보
  운송업체 : 화물적재계획서,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운송수단 및 항해에 대한 정보

STEP 07 수입물품 신고
- 주 체 미국 수입업체
- 방 법 도착 후 15일 이내 통관자동화시스템(AMS)을 통해 수입물품 신고
- 제출서류 적하목록, 수입신고서, 통관권리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STEP 08 수입검사
- 주 체 미국 수입업체
- 특 징 미국 FDA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검사/라벨검사/샘플검사 실시 여부 결정
- 검사내용
  ① 현장검사
  서류 및 수입화물간의 일치, 운송·보관 중 발생한 손상, 보관 온도, 부패여부 등 검사
  ② 샘플검사
  제품의 공중보건기준 충족 여부 검사
  ③ 라벨검사
  식품명·원산지 등 라벨링 규정의 표시 항목 및 요건 준수 여부 검사

STEP 09 관세 납부 및 반출
- 주 체 미국 수입업체
- 방 법 추정관세 납부 후 물품을 반출하며, 추후 관세 과부족분을 납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라벨링 제도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항목)	• 표기언어 • 제품명 • 순중량 •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 성분 목록 • 알레르겐 성분 • 영양성분표 • 원산지
라벨 표기사항	표기 언어	• 반드시 영어로 기재하며 외국어 표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언어로도 모든 의무 표기 사항을 기재해야 함
	제품명	•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며, 글씨체의 경우 주표시면에 쓰인 가장 큰 단어 혹은 그래픽의 절반 이상의 크기로 쓰여야 하며, 제품 최하단과 평행하게 표기되어야 함
		• 주스(과일 및 채소)가 들어있는 음료일 경우, 주스 함유량(%) 표기 필요
		• 제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형태(Sliced, Unsliced, Halves)를 명시
		• 외국어 표기로 된 식품의 경우, 영어와 외국어를 둘 다 표기
	순중량	• 주 표시면 하단 30%에 위치하며, 포장용기 내부의 식품 양을 표기
		• 모든 중량 표기는 영미 파운드법(oz, lb, quart)에 따라 표기하며, 분수·소수점 등의 표기도 허용. 미터법 단위도 함께 표기
		• 고체 제품의 경우 Net Weight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액체 제품의 'Net Contents' 혹은 'Net' 등의 단어는 선택 사항임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을 표기
		•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없을 경우 제품과 관련된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표기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도로명 및 번호, 도시, 집(Zip)코드, 주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
	성분 목록	•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되, 전체 제품 용량 및 무게의 2% 이하를 구성하는 성분명의 표기는 위 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일반적인 성분명을 사용할 것
		• 허가된 방부제 첨가 시 방부제의 통상 명칭 및 기능을 표기
		• 공인된 색소는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
	알레르기 정보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엔 반드시 기재하며 원재료명의 문자 크기 이상으로 표기함
		• 원재료 목록에 쓰여진 원재료명 뒤에 괄호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일반명을 기재하며, Contains의 C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콩, 참깨를 함유한 식품의 경우 알레르겐 성분 의무 표시 대상
		• 견과류, 생선, 갑각류 동물의 경우 유발 식품 작성 시 정확한 종(류)에 대한 표기 필수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영양성분표	• 열량, 총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식이섬유, 총 당, 가당),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철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1회 섭취량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영양성분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함
		• 수출하는 제품 면적에 따른 영양성분표 위치가 차등하게 적용됨
	원산지	• 미국 내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근처에 영어로 표기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인증 제도

(1) 필수 인증

인증명	미국 FDA 시설 등록	FDA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출서류	•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 현장실사용 별도 제출 서류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비용	없음	
유효기간	2년(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갱신 필요)	
절차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 식품시설정보 기재 → 미국 대리인 검증 → 등록 정보 검증 →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참고사항	• 식품 제조 시설은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하에 '식품 예방적 방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 관리를 다룬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식품안전계획'을 서면으로 구비하고 운영해야 함 • 수입자는 FSMA 하에 시행되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제품의 수입이 거부되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음	

(2) 선택 인증

인증명	USDA Organic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농무부(USDA)		
제출서류	신청인 정보, 제품 정보,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 최근 3년 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유기농 생산 또는 시스템 계획서		
비용	최초 신청 시 품목당 800달러(현장실사비용 별도)		
소요기간	약 6~10주	**유효기간**	1년(매년 갱신 필요)
절차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 현장실사 실시 →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인증명	IFANCA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제출서류	•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 현장실사용 별도 제출 서류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소요기간	약 3개월~6개월	**비용**	약 3,500달러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비용 산정 → 현장 실사 → 평가서 작성 → 할랄인증서 발부		

인증명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OU(Orthodox Union)		
제출서류	회사정보, 공장정보, 공장 원재료 목록, 제품허가요청서		
소요기간	약 3개월~6개월	**비용**	품목당 약 400~1,000만 원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랍비 배정 → 시설 심사 → 서류 및 시설심사 보고서 검토 → 계약서 검토 및 서명 → 라벨링 송부 및 최종승인		

인증명	Non-GMO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Non-GMO Project		
제출서류	송장, 구매 증명서,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재료와 시설의 수, 라이선스 계약서,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결과 등, 재료 분석 증명서		
소요기간	약 3개월~6개월	**비용**	제품당 약 200~500만 원
절차	기술관리기관(TA) 선택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사전평가 및 견적 → 현장심사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인증마크 부여		

출처: 각 인증기관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미국 내 밤 품목의 HS CODE는 탈각 여부 및 보관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미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세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미국 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0	
미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0%
한국 탈각밤 HS CODE	0802.42-0000	
미국 탈각밤 HS CODE	0802.42-0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0%
한국 냉동밤 HS CODE	0811.90-1000	
미국 냉동밤 HS CODE	0811.90-8095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14.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미국으로 밤을 수출할 때 검역 요건은 제품의 보관 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함. 따라서 수출 품목의 특징을 고려하여 검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표] 미국 밤 검역요건

품목명	냉동밤
수출요건	미국 도착 시 20℉(-6.7℃) 이하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함
필요 서류	수입허가서

품목명	밤
수출요건	미국 도착 후, 의무적으로 MB(Methyl Bromide)훈증[2]되고, 동 사항이 식물검역위생증(PC)상에 부기 되어야 함[3]
	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 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된 것은 미국 도착 후 MB훈증 면제 대상임
	(*) 곰 및 사이판은 상기 MB훈증 요건 없이 수출 가능
필요 서류	수입허가서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part 180 식품의 잔류농약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미국에서 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전자시스템 또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MB훈증: 일정 온도와 압력 하에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해 가스상태로 개발된 약재를 사용하여 해충의 호흡을 저해
3) 부기 내용: "해당 선적품은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나, 미측이 발행한 수입허가증에 의거 미국 내에서 병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처리가 실시될 것이 보증됨"(Although the shipment has been observed to be infested, the import permit will insure treatment in the U.S. to render it free of pests.)

[표] 미국 밤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말라티온	1.0ppm	설폭사플로르	0.015ppm
무기 브롬화물(훈증 잔류물)	200ppm	베타사이플루트린	0.01ppm
디코폴	0.1ppm	클로티아니딘	0.01ppm
플루다이오쏘닐	0.2ppm	람다사이할로트린	0.05ppm
피리플루퀴나존	0.02ppm	감마사이할로트린	0.05ppm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CFR), 농사로

(다) 통관거부 사례

미국으로 밤 품목을 수출할 때,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0건이었음.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1건으로 조사됨. 미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주로 서류 미비, 위생 문제, 또는 안전하지 않은 성분 사용 등이 통관 문제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표] 미국 밤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중국산	밤(카스타네아종) (탈각하지 아니한 것)	2021.10	서류미비/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통관거부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2) 감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미국 내 감 품목의 HS CODE는 감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미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두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미국 감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신선감 HS CODE	0810.70-1000	
미국 신선감 HS CODE	0810.70-0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2.2%

한국 건조감 HS CODE	0813.40-1000	
미국 건조감 HS CODE	0813.40-9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2.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미국으로 감을 수출할 때 검역 요건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함. 따라서 수출 품목의 특징을 고려하여 검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표] 미국 감 검역요건

품목명	신선감
수출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 위 사항은 식물검역위생증(PC)상에 부기 되어야 함[4]
	완전히 건조된 곶감은 검역상 제한없음
	(*) 괌 및 사이판은 상기 조건 관계없이 수출 가능 (식물검역위생증 및 수입허가서 필요)
필요 서류	수입허가서

품목명	건조감
수출요건	완전히 건조되어야 함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part 180 식품의 잔류농약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미국에서 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전자시스템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부기 내용: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애응애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표] 미국 감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파라콰트	0.05ppm	피라클로스트로빈	3.0ppm
포스핀	0.01ppm	클로티아니딘	0.5ppm
클로로탈로닐	1.5ppm	보스칼리드	8.0ppm
나프로파미드	0.1ppm	베타사이플루트린	0.01ppm
글리포세이트	0.2ppm	클로티아니딘	0.5ppm
옥시플루오르펜	0.05ppm	람다사이할로트린	0.05ppm
클로펜테진	0.05ppm	감마사이할로트린	0.05ppm
이미다클로프리드	3.0ppm	디노테퓨란	2.0ppm
디페노코나졸[5]	0.7ppm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0ppm
아족시스트로빈	2.0ppm	스피로테트라맷	2.5ppm
뷰프로페진	1.9ppm	펜티오피라드	3.0ppm
카펜트라존	0.1ppm	톨펜피라드	2.0ppm
플루디옥소닐	5.0ppm	(-)	(-)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CFR), 농사로

(다) 통관거부 사례

미국으로 감 품목을 수출할 때,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7건이었음. 그 중 임산물에 해당하는 감의 통관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이 5건으로 확인되었음.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0건으로 조사됨. 미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주로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이 통관 문제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이에 미국으로 한국산 감 품목을 수출 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미국 감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한국산	감(건조)	2019.06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2	한국산	감(건조)	2019.06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5) 볼드체로 표시된 물질은 한국산 감(Persimmon, Japanese)에 적용되며, 그 외 물질은 일반 감(Persimmon)에 적용됨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3	한국산	감(건조)	2019.05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4	한국산	감(건조)	2019.05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5	한국산	감(건조)	2019.01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6)]

(가) 수출 제한 사유

한국산 감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르면 감은 일반적으로 인과류(Pome Fruits)로 분류되며, 이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농약 성분은 허용됨. 그러나 미국은 한국산 감을 열대과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불검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산 감의 미국 수출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 같은 불검출 기준은 한국산 감의 수출 과정에서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초래하며, 곶감 등 가공품의 수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실제로 한국의 한 감 생산 및 수출업체는 건조감을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 카벤다짐 농약 성분이 미량 검출되면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음

6)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수출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

(나) 추진 경과

2018년 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 SPS 위원회에서 불검출 원칙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 감의 식품 분류 개정과 외삽 적용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첫 번째로, 식품 분류 개정 요청은 미국이 한국산 감을 열대과일로 분류하는 기준을 CODEX와 일치시켜 인과류(Pome Fruits)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음. 글로벌 CODEX는 한국산 감(Persimmon, Japanese)을 인과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한국산 감이 인과류의 기준(형태, 재배 지역, 병해충, 잔류량 등)과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두 번째로, 미국 연방규정집(CFR)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요청했음. CFR에서는 감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는 미국산 감(Persimmon, American)에만 해당되며 한국산 감(Persimmon, Japanese)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로 인해 한국산 감에도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되었음

세 번째로, 외삽 적용을 통해 불검출 원칙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 한국은 불검출 원칙이 적용되는 9종의 농약에 대해 인과류 기준을 열대과일에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쳤음. 이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미국 내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였음. 그러나 미국은 부적합 이력이 있는 9종의 농약 중 4종에 대해서만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며 제한적인 대응을 보였음

[표] 미국 잔류허용기준 신청 농약

구분	농약명(영문)	농약명(국문)	잔류허용기준 신청 가능 여부
1	Acephate	아세페이트	불가
2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드**	**가능**
3	Carbendazim	카벤다짐	불가
4	**Clothianidin**	**클로티아니딘**	**가능**
5	Methamidophos	메타미도포스	불가
6	Pyrimethanil	피리메타닐	불가
7	**Sulfoxaflor**	**설폭사플로르**	**가능**
8	**Tebuconazole**	**테부코나졸**	**가능**
9	Thiophanate-methyl	티오파네이트-메틸	불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8월, 한국은 감의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해 미국 측 유관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함. 같은 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단감과 떫은감을 포함한 감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함. 2018년에는 사전 조사 및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단감, 떫은감, 가공감을 대상으로 시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함. 또한, 미국 내 인과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있는 9종 농약의 자료를 보완하여 외삽 적용을 요청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농약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2019년 8월, 국립농업과학원은 감의 미국 수출을 위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회의를 개최하고, 감 방제에 필수적인 6개의 주요 농약 중 2개를 선정함. 연구는 대구대학교 연구팀이 단감 1개 포장, 떫은감 2개 포장에서 진행함

[표] 미국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농약

구분	농약명(영문)	농약명(국문)	농약 분류	선정 대상 및 사유
1	Dinotefuran	디노테퓨란	살충제	최근 상표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임
2	Fluazinam	플루지남	살균제	많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식품 분류 개정과 외삽 적용 요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 농약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한국 기업에 미국 검역 기준을 전파하고 대응 가이드를 배포하며 미국 규정 준수에 집중함.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은 풀루아지남 농약 기준 신청서를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제출하며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감.

2022년 3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하여 주요 수출 대상국(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별 농약 사용 기준을 제시함[7]. 같은 해 4월에는 미국 감(단감)의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잔류허용기준 삭제와 관련한 최대잔류한계(MRL) 개정사항 및 국내 농약 등록 현황을 반영한 수출 감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보급함. 이후에도 국립농업과학원은 최신 농약 규정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으며, 2023년 11월 최신 개정판을 배포함

7) 링크 : https://lib.rda.go.kr/search/searchDetail.do?ctrl=000000638673

3) 표고버섯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미국 내 표고버섯 품목의 HS CODE는 표고버섯의 보관상태 및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미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세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미국 표고버섯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표고버섯 HS CODE	0709.54-0000	
미국 표고버섯 HS CODE	0709.54-0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8.8¢/kg + 20%

한국 건조 표고버섯 HS CODE	0712.34-0000	
미국 건조 표고버섯 HS CODE	0712.34-100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1.3¢/kg + 1.8%

한국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1000	
미국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8090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6¢/kg on drained weight + 8.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미국으로 표고버섯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반입 시점에서 일반적인 검사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루어짐.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만 준수하면 됨

[표] 미국 표고버섯 검역요건

품목명	표고버섯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part 180 식품의 잔류농약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미국에서 표고버섯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전자시스템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미국 표고버섯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말라티온	8.0ppm	클로로탈로닐	1.0ppm
다이아지논	0.75ppm	디플루벤주론	0.2ppm
포스핀	0.01ppm	디클로르보스	0.5ppm
메트라페논	0.5ppm	사이로메진	8.0ppm
티아벤다졸	40.0ppm	프로피코나졸	0.1ppm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CFR), 농사로

(다) 통관거부 사례

미국으로 표고버섯 품목을 수출할 때,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7건이었음.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97건으로 조사됨. 따라서 대미 수출 시 농약 사용 기준 및 과거 수입산 부적합 사례에 특히 유의해야 함. 미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주로 라벨링, 위생 문제, 또는 안전하지 않은 성분 사용 등이 통관 문제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표] 미국 표고버섯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대만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4.06	라벨링/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통관거부
2	중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4.05	기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통관거부
3	캐나다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4.02	라벨링/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통관거부
4	중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4.02	기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통관거부
5	한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3.07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6	한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3.01	라벨링/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통관거부
7	한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3.01	기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통관거부
8	한국산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2022.12	위생(미생물)/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검출	통관거부

[표] 미국 표고버섯(건조)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중국산	표고버섯(건조)	2023.01	기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통관거부
2	중국산	표고버섯(건조)	2023.01	라벨링/ 각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 미표기, 제품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통관거부

[표] 미국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프랑스	표고버섯 (조제저장처리)	2023.05	기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라벨링/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 미표기,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통관거부
2	중국	표고버섯 (조제저장처리)	2023.04	기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통관거부
3	중국	표고버섯 (조제저장처리)	2019.10	기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통관거부
4	중국	표고버섯 (조제저장처리)	2019.08	성분(잔류농약)/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통관거부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8)]

(가) 통관 거부 사유

한국산 버섯의 통관 거부 사례는 주로 리스테리아균 검출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20년 3월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검출과 이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이슈화되며, 한국산 버섯의 수입 통관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 한국산 버섯의 주요 수출 부적합 원인은 리스테리아균 검출, 독성 성분 검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 라벨링 문제 등임. 2024년 상반기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 거부가 발생한 품목은 버섯류 농산물로, 28건의 통관 거부 사례가 보고됨. 특히,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제품에서 FSVP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로 확인됨

FSV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사 및 공급업체가 미국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제조 및 공급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임. 이외에도 라벨링 및 포장 미비(12건), 위생 문제(8건), 서류 미비(7건), 성분 부적합(2건), 기타 사유(35건) 등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됨

8) 자료 : 파이낸셜뉴스, '美 통관 거부 1위 한국 식품은 바로 '이것'…'K-푸드' 한류에 찬물', 2024.09

4) 산양삼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한국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세부 품목에 따라 5개로 분류되나, 미국 내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하나로 통합되어 분류됨. 한·미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미국 산양삼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산양삼(수삼) HS CODE	1211.20-1110	미국 산양삼(수삼) HS CODE	1211.20-1090
한국 본삼(산양삼)(백삼) HS CODE	1211.20-1211		
한국 본삼(산양삼)(홍삼) HS CODE	1211.20-1311		
한국 기타(산양삼)(홍삼) HS CODE	1211.20-1319		
한국 기타(산양삼)(백삼) HS CODE	1211.20-1219		

관세	
1순위 한·미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 내 산양삼에 대한 검역요건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검역요건을 참고함.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의 미국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수출 시 지속적인 주시와 관리가 필요함

[표] 미국 인삼 검역요건

품목명	인삼
수출요건	완전히 건조하여 상품 포장한 것과 홍삼은 가능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농촌진흥청 및 미국 식품의약국 내 산양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참고함. 미국 내 유통되는 인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part 180 식품의 잔류농약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미국에서 인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전자시스템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미국 인삼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다이아지논	0.75ppm	피리메타닐	1.5ppm
만코제브	1.2ppm	메타알데하이드	0.05ppm
DCPA	2.0ppm	펜헥사미드	0.30ppm
클로로탈로닐	4.0ppm	족사미드	0.30ppm
이프로디온	2.0ppm	플루아지남	4.5ppm
메탈락실	3.0ppm	페나미돈	0.80ppm
트리스알루미늄	0.05ppm	사이아조파미드	0.30ppm
테부코나졸	0.15ppm	에타복삼	0.10ppm
디페노코나졸	0.80ppm	만디프로파미드	0.30ppm
디메토모르프	0.90ppm	펜피라자민	0.70ppm
아족시스트로빈	0.50ppm	아이소페타미드	3.0ppm
플루디옥소닐	4.0ppm	옥사티아피프롤린	0.15ppm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CFR), 농사로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9)]

미국에서 산양삼은 별도의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신선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음. 2019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농무부(USDA)에 한국산 뿌리삼의 미국 수출 허가를 요청했으며, 미국 농무부는 2024년 6월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Panax ginseng C.A. Mey.)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함. 이에 따라 K-인삼의 미국 시장 확대가 기대됨

[그림]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 수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관보

52433

Notices

Federal Register
Vol. 89, No. 121
Monday, June 24, 2024

This section of the FEDERAL REGISTER contains documents other than rules or proposed rul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public. Notices of hearings and investigations, committee meetings, agency decisions and rulings, delegations of authority, filing of petitions and applications and agency statement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s are examples of documents appearing in this sec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Docket No. APHIS–2023–0023]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AGENCY: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USDA.

ACTION: Notice.

SUMMARY: We are advising the public of our decision to authorize th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findings of a pest risk analysis, which w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for review and comment through a previous notice, we have determined that the application of one or more designated phytosanitary measures will be sufficient to mitigate the risks of introducing or disseminating plant pests or noxious weeds via th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DATES: Imports may be authorized beginning June 24, 2024.

States from certain parts of the world to prevent plant pests from being introduced into or disseminated within the United States.

Section 319.56–4 contains a performance-based process for approving the importa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that, based on the findings of a pest risk analysis, can be safely imported subject to one or more of the five designated phytosanitary measures listed in paragraph (b) of that section. Under that process, APHIS proposes to authorize the importation of a fruit or vegetable into the United States if, based on findings of a pest risk analysis, we determine that the measures can mitigate the plant pest risk associated with the importation of that fruit or vegetable. APHIS then publishes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the pest risk analysis that evaluates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importation of a particular fruit or vegetable. Following the close of the 60-day comment period, APHIS will issue a subsequent **Federal Register** notice announcing whether or not we will authorize the importation of the fruit or vegetable subject to the phytosanitary measures specified in the notice.

In accordance with that process, we published a notice [1] in the **Federal Register** on May 1, 2023 (88 FR 26517, Docket No. APHIS–2023–0023), in which we announced the availability, for review and comment, of a pest risk analysis that evaluated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The pest risk analysis consisted of a pest risk assessment authorize th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the phytosanitary measures specified in the RMD that accompanied the initial notice.

These conditions will be listed in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APHIS Agricultural Commodity Import Requirements (ACIR) database (*https://acir.aphis.usda.gov/s/*).[2] In addition to these specific measures, each shipment will be subject to the general requirements listed in § 319.56–3 that are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all fruits and vegetables.

Paperwork Redu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44 U.S.C. 3501 *et seq.*), the recordkeeping and burden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is action are included under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ontrol number 0579–0049.

E-Government Act Compliance

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is committed to compliance with the E-Government Act to promote the use of the internet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ies, to provide increased opportunities for citizen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services, and for other purposes. For information pertinent to E-Government Act compliance related to this notice, please contact Mr. Joseph Moxey, APHIS' Paperwork Reduction Act Coordinator, at (301) 851–2533.

9) 자료 : KPI뉴스, '미국, 한국産 뿌리삼 수입 허가', 2024.06

(가) 주요 규제[10)]

미국으로 수삼 수출 시 위험관리문서(Risk Management Document, RMD[11)])에 명시된 식물 검역 조치를 따라야 함. 이외에도 모든 과일 및 채소 수입에 적용되는 "부속 L – 과일 및 채소" 규정 (7 CFR § 319.56-3)에 나열된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미국 동식물검역국(APHIS)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신선 수삼 수입 시 다음 조건하에서만 수입할 수 있음을 제시함. 한편, 한국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2024년 9월 9일자로 제정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수삼 수출을 계획 중인 국내 수출업체는 해당 검역요령 발간을 모니터링하여 수출 준비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미국 동식물검역국 신선 수삼 조건(주요 내용 발췌)

순번	내용
①	- 상업적으로 생산된 수삼만 수입할 수 있음 - 모든 뿌리는 세척된 상태여야 하며, 잎, 줄기 및 흙과 같은 오염 물질은 제거되어야 함 - 손상되거나 해충에 감염된 뿌리는 선별하여 제거해야 함
②	- 수삼은 한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등록된 생산지에서 재배되고, 한국 NPPO의 승인을 받은 포장 시설에서 포장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어야 함
③	- 수삼은 수확 전에 설련병균(Sclerotinia nivalis) 징후가 없는지 검사된 생산지에서 생산되거나, 재배 기간 동안 살균제 처리된 곳에서 생산되어야 함
④	- 한국 NPPO는 생산지와 포장 시설에서의 수출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문서를 최소 1년간 검토하고 보관해야 하며, APHIS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
⑤	- 한국 NPPO가 생산지나 포장 시설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생산지나 포장 시설에서 생산된 수삼은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함
⑥	- 수삼의 초기하적(Hypergeometric) 샘플은 수확 후 관리(Post harvest) 프로세스에 따라 수출국 NPPO에 의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 이 샘플은 설련병균(Sclerotinia nivalis)과 세 가지 일리오넥트리아(Ilyonectria) 종에 대한 시각적 검사를 거쳐야 함 - 금지된 균이 발견될 시 미국으로의 수삼 수입은 금지됨 - APHIS는 검역 해충이 발견된 생산지에서의 수삼 수입을 해당 시즌 동안 중단할 수 있음
⑦	- APHIS는 각 선적물에 대해 한국 NPPO가 검사를 실시하여 해충이 없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임 - 한국 NPPO는 수삼 선적물에 해충과 병연균이 없음을 확인하는 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⑧	- 수삼은 미국 입항 항구에서 모든 우려되는 해충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됨 - 수삼에는 우려되는 해충이 없어야 하며, 뿌리가 생산된 생산지와 처리 및 포장 시설을 명시해야 함 - 해당 명시 정보는 수삼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항구에서 방출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10)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미국]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으로 수출 가능', 2024.07
11) RMD : 해충 위험 평가에 따라, 해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한 인삼 뿌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위생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위험관리문서

5) 목재

(1) HS CODE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의 HS CODE를 10단위 기준 총 248개를 지정하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목재제품의 품목분류는 크게 목재류를 제44류, 펄프·판지류를 제47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HS 4단위 기준으로 12개, HS 6단위 기준으로 79개, HS 10단위 기준 248개에 해당됨[12]. 본 장에서는 주요 품목으로 4407호(제재목), 4408호(단판), 4411호(섬유판), 4412호(합판), 4415호(목재케이스), 4418호(건축목공)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그림] 목재제품 HS CODE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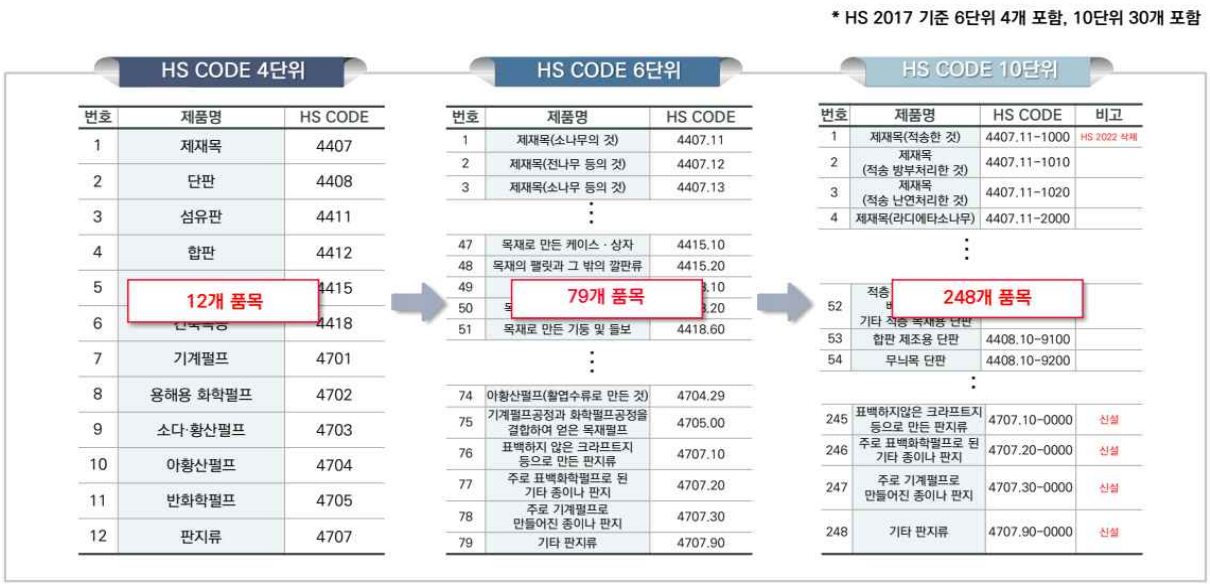

번호	제품명	HS CODE
1	제재목	4407
2	단판	4408
3	섬유판	4411
4	합판	4412
5		4415
6		4418
7	기계펄프	4701
8	용해용 화학펄프	4702
9	소다·황산펄프	4703
10	아황산펄프	4704
11	반화학펄프	4705
12	판지류	4707

번호	제품명	HS CODE
1	제재목(소나무의 것)	4407.11
2	제재목(전나무 등의 것)	4407.12
3	제재목(소나무 등의 것)	4407.13
⋮		
47	목재로 만든 케이스 · 상자	4415.10
48	목재의 팰릿과 그 밖의 깔판류	4415.20
49		.10
50		.20
51	목재로 만든 기둥 및 들보	4418.60
⋮		
74	아황산펄프(활엽수류로 만든 것)	4704.29
75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5.00
76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등으로 만든 판지류	4707.10
77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 종이나 판지	4707.20
78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	4707.30
79	기타 판지류	4707.90

번호	제품명	HS CODE	비고
1	제재목(적송한 것)	4407.11-1000	HS 2022 삭제
2	제재목 (적송 방부처리한 것)	4407.11-1010	
3	제재목 (적송 난연처리한 것)	4407.11-1020	
4	제재목(라디에타소나무)	4407.11-2000	
⋮			
52	적층 기타 적층 목재용 단판		
53	합판 제조용 단판	4408.10-9100	
54	무늬목 단판	4408.10-9200	
⋮			
245	표백하지않은 크라프트지 등으로 만든 판지류	4707.10-0000	신설
246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 종이나 판지	4707.20-0000	신설
247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	4707.30-0000	신설
248	기타 판지류	4707.90-0000	신설

12)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전략 연구', 2024.11

(2) 목재제품의 국내 수출규제[13)]

목재류 HS CODE 10단위 248개 중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수출규제가 있는 HS CODE는 총 60가지이며, 그 규제는 아래와 같음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3조, 제5~7조, 제10~12조, 제18~19조, 제23조)

(가) 다음의 HS CODE에 해당하는 폐지류로서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제4707.10호(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된 회수한 종이나 판지)

② 제4707.20호(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로 된 회수한 종이나 판지)

③ 제4707.30호(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로 된 회수한 종이나 판지)

④ 제4707.90호(기타 회수한 종이나 판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나 스크랩을 포함)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13)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전략 연구', 2024.11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②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다) 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 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다음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는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1 또는 부속서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수출할 수 없음

ⓐ 바젤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1조, 제21조의2, 제22조~25조)

(가) 다음의 HS CODE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제4407.11호(소나무의 것의 제재목)

② 제4407.12호(전나무 및 가문비나무의 것의 제재목)

③ 제4407.13호(S-P-S, 소나무와 전나무의 것의 제재목)

④ 제4407.14호(헴퍼와 전나무의 것의 제재목)

⑤ 제4407.19호(기타 침엽수류의 제재목)

⑥ 제4407.91호(참나무의 제재목)

⑦ 제4407.92호(너도밤나무의 제재목)

⑧ 제4407.99호(기타 제재목)

3)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가) 다음의 HS CODE에 해당하는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제4407.11호(소나무의 것의 제재목)

② 제4407.12호(기타 침엽수류의 제재목)

③ 제4407.21호(열대산의 목재인 마호가니의 제재목)

④ 제4407.29호(기타 열대산의 목재의 제재목)

⑤ 제4407.94호(체리나무의 제재목)

⑥ 제4407.99호(기타 제재목)

⑦ 제4408.10호(침엽수류 베니어용 단판,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밖의 목재)

⑧ 제4408.39호(기타 열대산 목재의 것의 베니어용 단판,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밖의 목재)

⑨ 제4408.90호(기타 베니어용 단판,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밖의 목재)

(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 상의 다음의 종이 해당함

① 협약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② 협약부속서 II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③ 협약부속서 III :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다) 허가 면제 품목

①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②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③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④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로서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⑤ 박물관용 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⑥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없음

상기 HS CODE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이외의 HS CODE의 목재는 수출규제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제한없이 수출이 가능함

(3) 검역

(가) 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에서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품목에 대한 검역요건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8개 품목의 제재목에 대한 검역요건이 제공되고 있음. 일부 목재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역요건 외에 국내 수출규제도 유의해야 함

[표] 미국 제재목 8종 검역요건

품목명	파우록소 제재목 부빙가 제재목 흑단 제재목 참죽나무 제재목 아프리카블랙우드 제재목 소나무 제재목 단풍나무 제재목 느티나무 제재목
수출요건	수피제거, 수입허가, 열처리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배출허용기준

미국으로 합성목재를 수출할 경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포름알데히드 배출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합판,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 합성목재 제품에 적용되며, 제조업체는 제3자 인증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를 증명해야 함.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전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미국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치

품목	종류	기준	발효일자
합성목재 (composite wood)	건목 합판-베니어 코어 사용(hardwood plywood with veneer core)	0.05ppm	2017.12.12.
	건목 합판-합성 코어 사용(hardwood plywood with composite core)	0.05ppm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0.09ppm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0.11ppm	
	얇은 중밀도 섬유판(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0.13ppm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CFR)

(다) 기타 규제현황[14)15)]

① 레이시법(Lacey Act): 2008년 개정된 레이시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 및 그 제품의 수입, 수출, 운송, 판매를 금지함. 이에 따라 수입자는 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원산지와 수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② 품질 및 등급 표준: 건축용 목재제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발표한 판재 표준인 PS-1 또는 APA(The Engineered Wood Association)의 PRP-108 등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검역규정: 미국 내 목재 수입에는 APHIS(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의 승인이 필요함. APHIS는 목재 제품의 검역 및 수입 요건을 규정하며,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예를 들어, 원목 및 제재목에는 열처리 또는 훈증 처리 후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마크를 요구하며, 포장재로 사용되는 목재 또한 동일한 검역 기준을 준수해야 함. 목재 제품의 종류와 가공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④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산림인증제도(SFI)는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인증을 확보하면 수입 절차에서 유리함. 만약 SFI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산림관리협의회(FSC) 또는 산림인증승인제도(PEFC)를 대체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16)]에서 확인 가능함

14) 자료 : KOTRA해외시장뉴스,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반 상승하는 목재 시장', 2018.06
15) 자료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美 환경청, 합성목재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2017.06
16) 링크 :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0861&mn=AR05_03_01

II. 중국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1) 요약

對중국 수출입절차

STEP 01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 내 용: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STEP 02 해외생산업체 등록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 내 용: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생산·가공·저장 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진행
- 등록 유형: ① 자체 등록 ② 추천 등록(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 ① 자체 등록 : 추천 등록 대상이 아닌 식품
  - ② 추천 등록 : 육류, 수산물, 제비집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소 함유 밀가루 음식, 보건식품, 조미료, 건조과일, 특수선식식품, 유제품 등 총 18가지 식품
- 특 징: 등록 완료 후 등록번호가 교부되며, 이를 식품 내·외포장에 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

STEP 03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주 체: 국내 수출업체
- 내 용: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 특 징: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STEP 04 통관고유번호 발급

- 주 체: 중국 수입업체
- 발급처: 중국 해관총서
- 방 법: 베이징, 광저우 등 각 관할 해관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

STEP 05 적하목록 사전제출

- 주 체: 중국 운송·수입업체
- 내 용: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중국 해관총서에 적하목록 제출
- 제출서류: ① 도착시간 ② 화물 정보(HS코드, 품목명 등) ③ 운송인 및 수하인 정보

STEP 06 수입신고

- 주 체: 중국 수입업체
- 방 법: 중국 도착 후 14일 이내 'Single window 시스템'으로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운송서류 ④ 포장명세서 ⑤ 검사검역신고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중국어 라벨 등

STEP 07 수입검사

- 주 체: 중국 수입업체
- 방 법: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수입검역 신청
- 제출서류: ① 위생증명서 ② 상업송장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④ 원산지증명서 ⑤ 무역계약서 ⑥ 중문라벨 등
- 검사내용: ① 서류심사 ② 현물검사 ③ 라벨검사
  - ① 서류심사 : 서류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검사 진행
  - ② 현물검사 : 화물-서류간 일치, 포장 상태, 중문 라벨 존재 여부 검사
  - ③ 라벨검사 : 식품 라벨의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검사

STEP 08 관세 납부 및 반출

- 주 체: 중국 수입업체
- 내 용: 납부고지서 발급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라벨링 제도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 제품명 • 성분표 • 중량 및 규격 • 생산자, 수입업체 또는 현지 중개판매자 명칭/ 주소/연락처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보관방법 •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 영양라벨 • 원산지
라벨 표기사항 (권장항목)	• 로트번호 • 섭취 방법 •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기사항	표기 언어	• 표준 중국어(간체자가 기본이며, 병음 표기 가능)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사용 시 해당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함
	제품명	•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명칭을 사용하며, 없는 경우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동식물을 원료로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정 형태를 모방한 경우 인조, 모방 등의 문자를 붙여야 함
		•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성분표	• 첨가량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함
		• 2% 이하 배합원료는 제외함
		• 중국국가표준(GB)이 규정하는 식품첨가제 통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중량 및 규격	• 제조 시 사용되는 공정수와 식용 가능한 포장재를 표시해야 함
		• 법적 계량 단위((밀리)리터,(킬로)그램)를 사용해야 함
		• 내용량에 따른 글자 부호 최소 높이(2~6mm)를 준수해야 함
	날짜 표시	• 보충 인쇄 및 별도 스티커는 금지함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 알콜함량 10% 이상의 주류, 식초, 식염, 고체 설탕은 표기 면제가 가능함
		• 년, 월, 일 또는 국가표준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함
	생산자, 수입업체 또는 현지 중개판매자 명칭/ 주소/연락처	• 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함(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생산자 정보 필수 아님)
		• 위탁 가공의 경우 위탁 의뢰 업체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글자 크기	• 1.8mm이상(60cm²이상 제품 면적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 상표를 제외한 외국어는 한자보다 작아야 함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보관방법	•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보관방법을 표시해야 함
		• '보관방법', '저장 조건', '저장 방법'등의 타이틀로 표시하거나 타이틀 없이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	•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을 표기할 것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함

출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28050-2011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식품안전정보원

3) 인증 제도

(1) 필수 인증

인증명	GACC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출서류	중국 수출기업 등록 신청서, 신분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이 GACC 등록 규정의 요구에 맞는다는 기업의 성명	
비용	없음	
소요기간	약 7일(신청 품목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	5년(6개월 전 갱신 신청)	

(2) 선택 인증

인증명	중국 유기제품인증(ORGANIC)	
발행 및 검사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제출서류	신청서, 기본 농장조사, 비즈니스 자격 문서, 관리시스템 문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계획 등	
비용	품목당 2만 위안 이상(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소요기간	최소 4~6개월	
유효기간	1년	

출처: 각 인증기관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중국 내 밤 품목의 HS CODE는 탈각 및 냉동 여부에 따라 세 개의 품번으로 분류됨. 한·중 FTA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은 협정세율이 적용됨.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중국 미탈각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0	
중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1000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잠정세율
	21.3%	25%

[표] 중국 탈각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탈각밤 HS CODE	0802.42-0000	
중국 탈각밤 HS CODE	0802.42-1000	
관세	1순위 한·중 FTA 협정세율	2순위 잠정세율
	12.5%	25%

[표] 중국 냉동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냉동밤 HS CODE	0811.90-1000	
중국 냉동밤 HS CODE	0811.90-1000	
관세	1순위 한·중 FTA 협정세율	2순위 잠정세율
	15%	3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중국으로 밤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표] 중국 밤 검역요건

품목명	냉동밤/밤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중국 내 유통되는 밤은 아래와 같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임. 아래 표는 중국으로의 밤 수출 시 적용될 수 있는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표] 중국 밤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티오파네이트메틸	3.0ppm

출처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SC) 국가표준식품잔류허용농약기준(GB 2763-2021)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17)]

2023년 중국「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개정으로 밤 수출 시 수출 작업장의 해관총서 등록이 의무화됨. 규정 적용 범위가 기존 4개 식품군에서 모든 18개 식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견과와 씨앗류에 해당하는 밤 또한 해관총서 등록이 의무화되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청 등 국내 기관들이 밤 수출 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17)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수출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

2) 감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중국 내 감 품목의 HS CODE는 떫은감과 건조감 두 개의 품번으로 분류됨. 한·중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은 협정세율이 적용됨.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중국 떫은감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떫은감 HS CODE	0810.70-1000	
중국 떫은감 HS CODE	0810.70-0000	
관세	1순위 한·중 FTA 협정세율	2순위 잠정세율
	6.6%	20%

[표] 중국 건조감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건조감 HS CODE	0813.40-1000	
중국 건조감 HS CODE	0813.40-9090	
관세	1순위 한·중 FTA 협정세율	2순위 잠정세율
	12.5%	2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현재 떫은감과 곶감(건조감)은 원칙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떫은감의 경우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품목과 함께 중국으로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상대국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임. 또한, 곶감(건조감)의 경우 홍콩 지역으로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표] 중국 감 검역요건

품목명	떫은감
수출요건	수출 불가

품목명	(건조감)
수출요건	홍콩은 수출 가능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중국 내 유통되는 감은 아래와 같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임. 아래 표는 중국으로의 감 수출 시 적용될 수 있는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표] 중국 감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피라클로스트로빈	5ppm	스피로테트라맷	5ppm
이마자릴	2ppm	에테폰	30ppm
프로클로라즈 및 프로클로라즈-망간 염화 복합체	2ppm	(-)	(-)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SC) 국가표준식품잔류허용농약기준(GB 2763-2021)

(다) 통관거부 사례

중국으로 감 품목을 수출 시,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2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량 태국산 건조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태국산 건조감의 통관 문제 주요 사유는 라벨링 불량, 위생 문제, 수분 과다 등으로 인한 성분 기준치 미달로 분석됨

[표] 중국 감 통관거부 대표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태국산	감(건조)	2024.01	성분/수분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2	태국산	감(건조)	2021.09	위생/곰팡이 발생	폐기 또는 반송
3	태국산	감(건조)	2021.07	라벨링/라벨 불합격	폐기 또는 반송
4	태국산	감(건조)	2021.06	성분/이산화황 사용량 초과	폐기 또는 반송
5	태국산	감(건조)	2021.05	성분/산성도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6	태국산	감(건조)	2020.09	성분/수분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7	태국산	감(건조)	2020.06	기타/불결 부패	폐기 또는 반송
8	태국산	감(건조)	2020.05	성분/이산화황 사용범위 초과	폐기 또는 반송
9	태국산	감(건조)	2020.05	라벨링/라벨 불합격	폐기 또는 반송
10	태국산	감(건조)	2020.03	성분/수분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3) 산양삼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한국 산양삼 품목의 HS CODE와 중국 내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산양삼 형태에 따라 각각 다섯 가지로 분류됨. 각 품목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세율은 한·중국 FTA 협정세율, 최혜국 세율, RCEP 협정세율로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표] 한국 산양삼 HS CODE

한국 산양삼(수삼) HS CODE	1211.20-1110
한국 본삼(산양삼)(백삼) HS CODE	1211.20-1211
한국 본삼(산양삼)(홍삼) HS CODE	1211.20-1311
한국 기타(산양삼)(홍삼) HS CODE	1211.20-1319
한국 기타(산양삼)(백삼) HS CODE	1211.20-1219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표] 중국 산양삼 HS CODE 및 관세율

중국 신선하거나 말린 야생 인삼 HS CODE	1211.20-2190	
관세	1순위 한·중국 FTA 협정세율	2순위 아시아·태평양 협정(APTA) 세율
	6.6%	16.4%

중국 냉장 또는 냉동된 야생 인삼 HS CODE	1121.20-2990	
관세	1순위 한·중국 FTA 협정세율	2순위 RCEP 협정세율
	6.6%	10.5%

중국 기타 신선한 야생 인삼 HS CODE	1121.20-9191	
관세	1순위 한·중국 FTA 협정세율	2순위 최혜국 세율
	6.6%	20%

중국 기타 말린 야생 인삼 HS CODE	1121.20-9291	
관세	1순위 최혜국 세율	2순위 기본세율
	20%	50%

중국 기타 냉장 및 냉동된 야생 인삼 HS CODE	1121.20-9991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최혜국 세율
	10.5%	2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 내 산양삼에 대한 검역요건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검역요건을 참고함

[표] 중국 인삼 검역요건

품목명	인삼(신선 또는 건조)
수출요건	흙 또는 중국 측 검역병해충 감염이 없어야 함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농촌진흥청 및 중국 농업농촌부 내 산양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참고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중국에서 인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중국 인삼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펜피라자민	0.7ppm	지네브	0.3ppm
클로로탈로닐	2ppm	플루실라졸	0.2ppm
피라클로스트로빈	0.2ppm	티람	0.3ppm
프로피코나졸	0.1ppm	크레속심 메틸	0.1ppm
프로피네브	0.3ppm	시프로디닐	0.1ppm
아모밤	0.3ppm	아조시스트로빈	1ppm
메티람	0.3ppm	디메토모프	0.1ppm
만코제브	0.3ppm	테부코나졸	0.15ppm

출처: 미국 농무부(USDA)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18)]

(가) 중국 산양삼 비관세장벽

중국으로의 산양삼 수출은 신선 농산물로서의 일반 식품으로 진행되지만, 의약품으로도 등록 가능함. 또한, 중국 해관총서의 생산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원료 선정 단계에서부터 중국 정부가 규정한 원료 목록 및 관련 절차[19)]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그림] 중국 보건식품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18) 자료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수출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
19) 링크 : https://www.fmis.kr/public/html/HtmlPage.do?pg=/gabin/sub_405/sub_4050400_4_4.jsp&pageNo=405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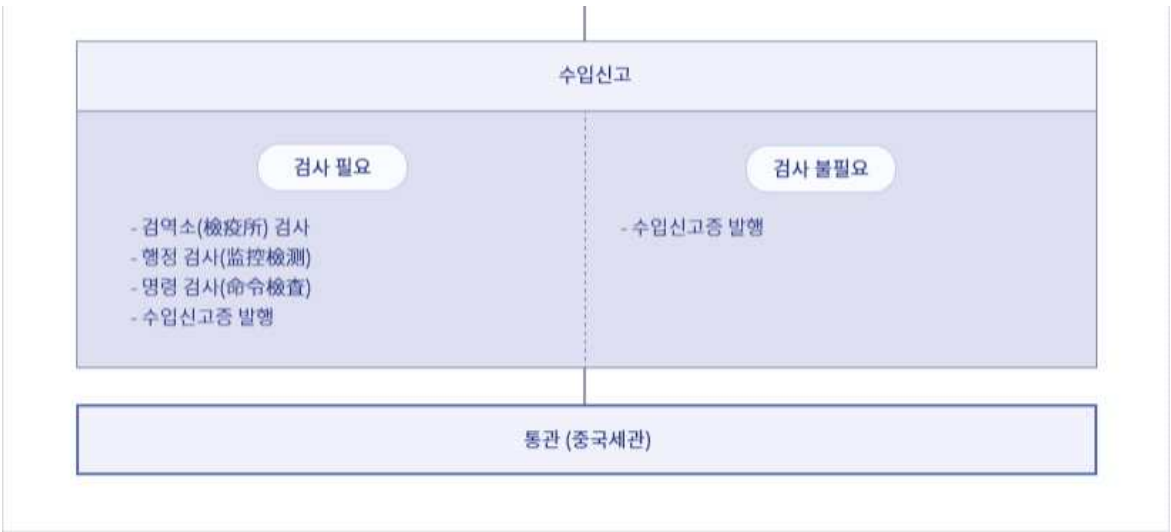

[그림] 중국 보건식품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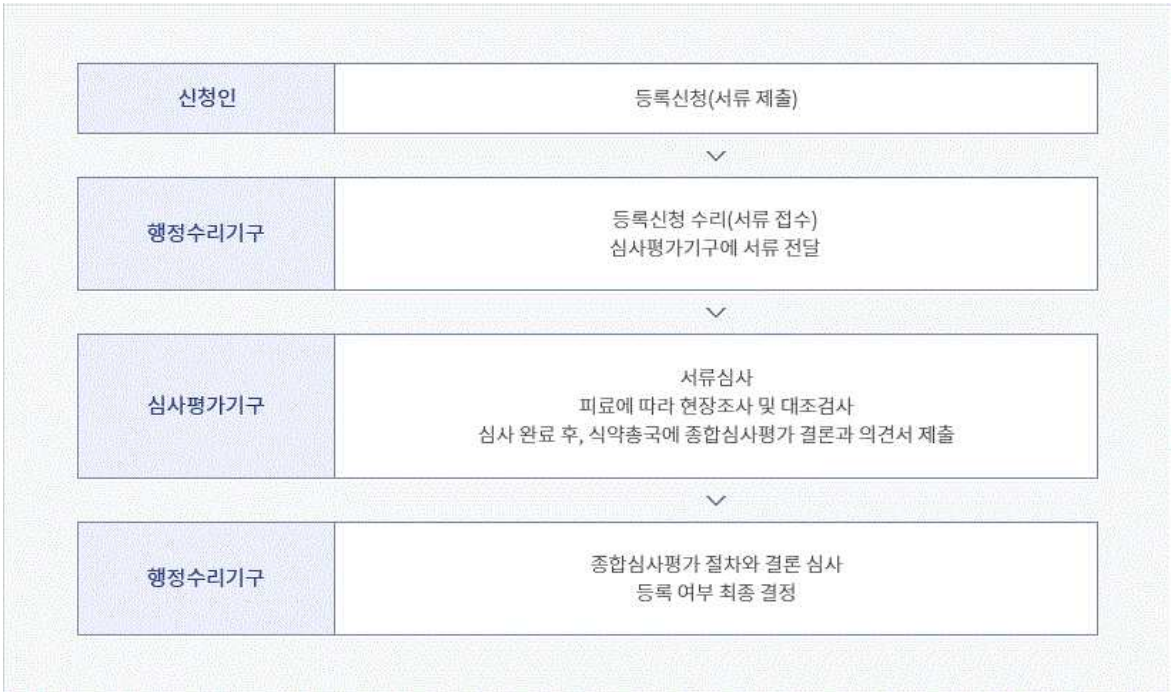

4) 조경수·분재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조경수와 분재는 형태와 수종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살아 있는 식물이라는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지 않아 HS 코드 체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중국에서도 조경수와 분재에 대한 고유 HS CODE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기타 살아 있는 식물'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한국에서 중국으로 조경수·분재 수출시 한·중 FTA에 따라 협정세율 0%가 적용됨

[표] 중국 조경수·분재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단풍나무 HS CODE	0602.90-2021	**중국 조경수·분재 HS CODE**	0602.9099
한국 조경용 기타 HS CODE	0602.90-2021		
한국 분재 HS CODE	0602.90-2010		
관세			
1순위 한·중 FTA 협정세율		2순위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APTA)	
0%		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수출절차[20)]

중국으로의 조경수·분재 수출은 총 10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조경수·분재 수출 단계

상담 및 예약	인보이스 발송, 사인 획득 CITES 확인, 원산지증명서 신청
▼	
수송 수단 및 일정 확인	통관업체 의뢰
▼	
수출허가 서류 준비	중국정부의 수입허가서 취득(수입업자) 식물검역 신청, 포장재 검역 신청
▼	
상품 확보 및 포장	상자번호 기입
▼	
수출서류 작성	최종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작성
▼	
식물검역	농장 또는 집하장에서 출장 검역
▼	
항구반입	통관업체 인도
▼	
통관	통관업체 수행
▼	
수송	
▼	
현지 식물검역 및 통관	

(가) 상담

수출 상담 시 상품 목록, 단가, 운임견적을 사전 준비하여 바이어에게 제시함. 중국 수출의 경우, 수입허가증이 필수이며, 이는 수입업자가 취득해야 함

(나) 계약 성립

계약 시 가격, 지불 조건 등을 협의하며, 조경수 가격은 목대가격, 굴취포장비, 농장에서 항구까지 운송비, 선적비용, 수출관련 서류 대행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20) 자료 : 산림청,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연구', 2016.11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됨. 납기일 준수를 위해 상품 준비 및 소독 작업 기간도 고려해야 함

(다) 수송 수단 및 일정 확인

계약 후 바이어의 도착 희망일에 맞춰 식물검역 기간과 운송 일정을 조율하며, 통관업체에 수송 수단을 의뢰함

(라) CITES[21] 및 재배매질 검역

수출 품목이 CITES 규제 대상인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재배매질의 사전 검역도 필수임. 특히, 심비디움 등 양란류는 반드시 CITES 취득이 필요하므로 상담이 성약되면 즉시 신청해 둘 것을 권장함

[표] 조경수·분재 수출입 허가 사항

항목	한국	중국	적용품목	비고
온실허가	검역본부	(-)	심비디움, 동양란	
수출자 허가	검역본부	(-)	심비디움, 동양란	
수입자 허가	(-)	임업국	전품목	생산, 경영허가증
재배매질 사전검역	2kg 송부	검험(CCIC)	전품목	3개월 소요
CITES	지방환경청	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국	난류, 주목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상공회의소			
수출입검역	검역본부	검험(CCIC)	전품목	수출입통관시
품목수입허가	(-)	임업국	전품목	6개월 소요

(마) 수출 허가 서류 준비

식물검역검사증명서와 CITES 원본을 준비하고, 현지 바이어의 수입허가증을 확보해야 함

(바) 포장 및 수출 서류 작성

상품 포장 시 규격과 수량을 준수하고,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출 및 수입 통관에 대비함

21)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의 멸종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조경수·분재 수출 서류 준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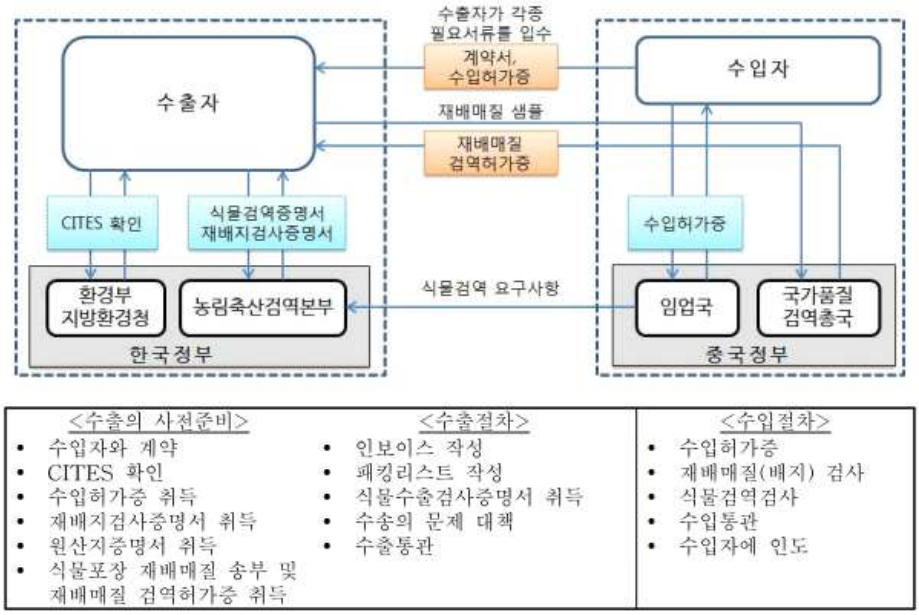

(사) 검역 및 통관

상품 검역은 농장 또는 집하장에서 진행하며, 검역 합격 후 통관 신청을 통해 수출이 완료됨

(아) 수송 및 현지 통관

수출된 화물은 냉장 보관 후 선박에 적재되며, 현지에서 식물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함

(3) 통관 및 검역[22)]

(가) 수출 수목의 전처리 작업

수목을 수출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흙과 병해충 반입을 금지함. 합법적으로 수출하려면 흙을 제거하고 피트모스와 같은 인공 무균토에 옮겨 심은 뒤,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정이 필요함. 흙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입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폐기나 반송으로 이어져 큰 손해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

뿌리에서 흙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훼손될 수 있어, 세척 후 곧바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손상된 뿌리는 이식 후 활착률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뿌리를 세척한 뒤 피트모스와 같은 인공 무균토에 옮겨 심어 새로운 뿌리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함. 새로운 뿌리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준비해야 함. 또한,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면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수출 수목을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해충이 붙지 않도록 살충제를 수시로 살포해야 함. 특히, 철저히 선충 방제를 실시한 농장에서 수출하고, 수출 전에 검사기관에서 선충 유무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함

(나) 통관절차

흙을 포함한 수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지정된 해관의 항구에서 수입검역 수속을 거쳐야 함

[표] 조경수·분재 수입 지정 해관 및 항구

지역	적용품목	비고
절강성	닝보 (宁波) 해관	①宁波北仑港
복건성	샤먼 (厦门) 해관	②厦门东渡港
광동성	선전 (深圳) 해관	③沙头角口岸, ④蛇口港
	포산 (佛山) 해관	⑤佛山南海港, ⑥十顺德勒流港
	판위 (番禺) 해관	⑦十番禺莲花山口岸
광서성	난닝 (南宁) 해관	⑧东兴口岸
운남성	쿤밍 (昆明) 해관	⑨磨憨口岸

22) 자료 : 산림청,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연구', 2016.11

수입신고는 수하인이 B/L(선하증권)을 갖고 직접 또는 대리업체를 통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패킹 리스트, 화물 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수입 신고단, 멸종위기품종 또는 비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 식물수입허가서,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서 등이 있음. 또한, 최혜국 관세율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통관신고단을 접수하면, 세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화물을 검사함. 이후 세금 징수와 세관 감독 절차를 마무리한 후 통관 도장을 찍어 화물을 수령할 수 있음

조경수와 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식물, 식물성 유기비료, 폐기물, 자투리 및 기타 식물에 해로운 생물을 포함한 전체 검역을 받아야 함. 수출 전에 중국 임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수이며, 수입 실적이 없는 수종의 경우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요구됨. CITES 대상 수종이라면 관련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검역 조건의 엄격함임. 예를 들어, 소나무, 흙, 모래, 점토, 피트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수목의 뿌리를 감싸는 재배매질(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은 중국 검역국의 사전 검사를 통과해야 함. 또한, 흙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수출하되, 이식 후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수출검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다) CITES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임.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임. 중국은 〈멸종 위기종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와 〈멸종 위기종 동식물 국제무역 공약〉에 따라,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증명서와 물종 증명허가를 받아야 함

(라)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서

식물검역 절차는 심사, 등록, 검역신고, 항구검역, 후속 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재배 매개체에 대한 검역을 거쳐 중국수출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식물검열검역허가증 등록 신청서, 수입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업코드 사본, 중국 수출입기업 지역 허가증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부 사본, 기업법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필요 시 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수입대리업자 승낙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수입묘목검역허가서는 임업부 또는 농업부를 통해 신청하며, 임업부에서 리스크 평가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 시《임업종자·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 검역 승인서, 引进林木种子苗木及其它养殖材料检疫审批单》를 발급함. 또한, 임업부로부터 수입임목종자경영허가증, 생산허가증과 격리재배단지 시설허가증도 획득해야 함.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이 필요하며 발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첫 수입 시 수입량이 약 50주로 제한되며 일정 기간 격리재배를 해야 함

수입 금지품은 식물병해충 및 유해생물, 흙, 그리고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품목으로, 이러한 품목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도 수입 불가함. 예를 들어, 한국의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의 침입 가능성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표]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식물명	지역	금지사유
옥수수종자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유고, 이탈리아, 폴란드, CIS	Erwinia stewartii
대두종자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Phytophthora megasperma
감자괴경(종자용)	미국, 캐나다, 유럽	Potato yellow dwarf virus, Potato mop-top virus Glogbdera rostochiensis Clobodlera Pallida Syhchytrium endobioticum
느릅나무(Ulmus spp.) 묘목 및 삽수	미국, 캐나다, 유럽	Ceratocystis ulmi
소나무(Pinus spp.)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	Bursaphenchus xylophilus Hemiberlesia pitysophila
고무나무(Hevea spp.) 순, 묘목 및 종자	멕시코, 중남미	Microcyclus ulei
담배속(Nicotiana spp.) 번식재료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Peronospora hyoscyami
식물병원체,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 GMO 물질		中国进出境植物检疫法 제5조
토양		中国进出境植物检疫法 제5조

(마) 식물재배매질 및 식물검역

중국은 토양(흙)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입 식물에는 별도의 재배매질을 사용해야 함. 이 재배매질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지역의 검험검역국(예: 상하이 검험검역국)을 통해 심사 비준을 신청해야 함. 심사비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식물수입의 매질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제출서류	•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서(공동) • 식물재배매질: 사용되는 저장단위의 방역평가 리포트 • 식물재배매질을 처음 수입할 경우 매질의 출처, 성분, 생산라인 등 관련 자료와 샘플 제출(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의 지정 실험실에 송부, 수량은 1.5-5kg) •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 검역심의 심사비준서, 검역허가증 신청업체 등록표
절차	• 신청: 신청업체는 전자식 혹은 서면으로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 제품별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 접수: 직속 검험검역국은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에 따라 접수여부 결정.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료를 받은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 고지하여 보충 혹은 수정하게 함. 검험검역국에 접수된 후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동식물사(国家质检总局动植司)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 • 심의, 비준: 동식물사는 직속 검험검역국이 제출한 신청을 심의한 후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하고 동시에 〈허가증〉 혹은 〈미허가통지서(未获准通知书)〉를 발급. 심의는 검험검역국이 신청 접수일에서 20일(휴무제외)이내에 완성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국가임업국

중국에서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출입동식물제품검역심사를 통과해야 함. 검역 대상에는 번식재료(묘목, 씨앗, 가지 등), 병해충, 식물성 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검역 절차는 증명서 심사, 물품 증명서 검사, 현장 검역, 실험실 검역 순으로 진행됨

흙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 대체 재배매질을 사용해야 하며, 매질 샘플은 사전에 검역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된 조경수 및 분재는 지정된 격리재배 장소에서 검역관의 관리와 점검을 받으며, 분재는 땅에서 1m 이상 위에 보관하고 조경수에는 태그를 부착해야 함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소독, 반송, 소각 조치가 이루어짐. 제출 서류로는 입국 물품 검역신고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 검역증명서, 생산지 증서, 무역 계약서 및 포장 명단 등이 필요하며, 병해충위험도 평가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특히 소나무, 흙, 모래, 점토, 피트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묘목은 동백, 단풍, 목백일홍, 철쭉 등 12개 품목에 한정됨. 중국은 외국산 품종 도입을 장려하며, 통관 절차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병해충 위험 관리와 격리재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Ⅲ. 일본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1) 요약

對일본
수출입절차

STEP 01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내 용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규정 사전 파악

STEP 02 수출신고 후 운송수단 선적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내 용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특 징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STEP 03 사전수입신고(선택)

대 상	일본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체
방 법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관할 검역소 창구에 접수
혜 택	서류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 일본 도착 직후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즉시 반출할 수 있음

STEP 04 적하목록 사전제출

주 체	일본 운송·수입업체
방 법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제출내용	제품정보,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운송수단 정보 등

STEP 05 수입신고

주 체	일본 수입업체
방 법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 서류 제출
제출내용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STEP 06 수입검사

주 체	일본 수입업체
특 징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 방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검사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① 서류심사 ② 현장검사 ③ 시험검사 또한,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 검사 ④ 행정검사

STEP 07 관세 납부 및 반출

주 체	일본 수입업체
방 법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 (CIF가격+가산요소*) X 관세율 *가산요소 : 수입항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라이선스료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라벨링 제도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 정보 • 원료 정보	• 식품첨가물 • 순중량 • 유통기한 • 보관방법	• GMO 성분에 대한 표시 •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표기 언어	• 일본어로 표기할 것	
		•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할 것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성분의 경우 용도와 같이 기입할 것	
		• 일반명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사용할 것(e.g. 비타민 C – Sodium L-ascorbate)	
		•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 대하여 작성할 것	
		• 산화 지방, 콜레스테롤, 당,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성분의 경우 작성자 임의로 추가 가능	
		•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분 또는 1포장 단위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것	
	원료정보	•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 복합재료의 경우 괄호 표기 후, 원재료를 표기할 것	
	보관방법	• 보관에 적절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것	
		• 상온 보전 의외 유의 사항이 없을 시, 미표기 가능	
	수입자 및 제조자 정보	•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할 것	
	GMO 성분 표기	• 등록된 GMO 식품들인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기할 것	
	알레르기 정보	•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 호두	
		• 일본 소비자청은 다음 20개 항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표기하도록 권고 중 •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 복숭아, 얌(Yam), 사과, 젤라틴	
	순중량	• 단위는 g(또는 kg), l(또는 ml)로 기재할 것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원산지	• 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지국을 표시해야 함
	기타	•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JAS마크 표기 및 유기농 표기 가능
		•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 사용 가능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일본 소비자청(CAA)

3) 인증 제도

(1) 선택 인증

인증명	JAS 유기 인증(유기농 등 유사 표기 시 필수)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생산일정 관리 담당자의 성명·약력 등	
비용	1,200~2,000만 원	
소요기간	8주 이상	
절차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인증 발급(1년)	

인증명	JGAP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JGAP 협회	
제출서류	• 생산자 명단, 필자 명단, 인증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등	
비용	품목당 128,000엔 이상	
소요기간	약 4주(사전 준비기간 제외)	
절차	‘JGAP관리점과 적합 기준’ 사전확인 및 자가점검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 → 판정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출처: 각 인증기관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일본 내 밤 품목의 HS CODE는 탈각 여부와 보관 상태에 따라 분류됨. 2021년 2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가 발효되었으나, 한국산 밤의 수입에는 RCEP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세 품번 모두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표] 일본 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0	
일본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9.6%	16%

한국 탈각밤 HS CODE	0802.42-0000	
일본 탈각밤 HS CODE	0802.42-00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9.6%	16%

한국 냉동밤 HS CODE	0811.90-1000	
일본 냉동밤 HS CODE	0811.90-29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12%	2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일본으로 밤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다만, 신선밤(미탈각밤)은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착 7일 전까지 일본 식물검역소에 검역 신청을 완료해야 함

[표] 일본 밤 검역요건

품목명	냉동밤/밤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본 식물검역소에 검역을 신청하려면, 먼저 식물이나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식물방역소에 신고해야 함. 수입된 식물은 반드시 원래 상태 그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수입자가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이 과정은 대부분 식물검역협회에서 대행함. 또한, 수입자는 검사가 진행될 때 식물방역관의 요청에 따라 운반, 해장, 하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검사는 항구나 비행장 내에서 식물방역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하역 부두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재식용 식물은 컨베이어 벨트나 균핵선별기 등이 설치된 장소로 운반해 검사를 실시함

검사 수량은 식물의 종류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바나나나 파인애플과 같은 품목은 각 품목별로 수입량에 맞춘 검사 수량이 지정됨.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일본 내 수입 검역이 원활히 진행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음. 필요시 식물방역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23]

23) 링크 : http://211.241.91.17/plant/exQua/plant_new_page/plant_exp_rule_countries/plant_exp_jatest_nat.jsp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본 내 유통되는 밤은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The Japan Food Chemical Research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에서 규제하고 있음. 아래 표는 일본에서 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홈페이지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일본 밤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γ-BHC	0.01ppm	아세키노실	0.02ppm
DBEDC	0.5ppm	아세타미프리드	0.1ppm
DDT	0.05ppm	아조시스트로빈	0.02ppm
EPTC	0.1ppm	아트라진	0.02ppm
아이옥시닐	0.1ppm	아바멕틴	0.01ppm

출처: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2) 감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일본 내 감 품목의 HS CODE는 감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국산 감 수입 시 RCEP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떫은감 4.4%, 건조감 6.5%의 관세율이 적용됨.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일본 감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떫은감 HS CODE	0810.70-1000	
일본 떫은감 HS CODE	0810.70-000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WTO 협정세율
	4.4%	6%

한국 건조감 HS CODE	0813.40-1000	
일본 건조감 HS CODE	0813.40-022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WTO 협정세율
	6.5%	9%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일본으로 감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다만, 신선감의 경우 제품 명칭과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포장된 제품은 내용량, 사업자 상호 및 주소, 보관 방법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함

[표] 일본 감 검역요건

품목명	곶감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본 내 유통되는 감은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에서 제공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규제하고 있음. 아래 표는 일본에서 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홈페이지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일본 감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디티아논	1ppm	디노테퓨란	2ppm
디페노코나졸	0.8ppm	클로티아니딘	0.5ppm
시메코나졸	0.3ppm	비펜트린	0.5ppm
테부코나졸	1ppm	클로란트라닐리프롤	0.3ppm
플루트리아폴	0.4ppm	테플루벤주론	0.5ppm
플루아지남	0.3ppm	사이플루트린	0.7ppm
테트라코나졸	0.5ppm	아세타미프리드	1ppm
델타메트린	0.3ppm	폴리옥신디	0.05ppm

출처: 농사로, 일본 후생노동성(MHLW)

3) 대추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일본 내 대추 품목의 HS CODE는 대추의 형태와 보관 상태에 따라 분류됨. RCEP 대한민국(RCKR) 또는 WTO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신선대추는 4.4%, 건조대추는 6.5%, 냉동대추는 12%로 관세율이 상이함. RCEP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일본 대추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신선대추 HS CODE	0810.90-3000	
일본 신선대추 HS CODE	0810.90-290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WTO 협정세율
	4.4%	6%

한국 건조대추 HS CODE	0813.40-2000	
일본 건조대추 HS CODE	0813.40-029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WTO 협정세율
	6.5%	9%

한국 냉동대추 HS CODE	0811.90-2000	
일본 냉동대추 HS CODE	0811.90-29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12%	2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일본으로 대추를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표] 일본 대추 검역요건

품목명	대추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본 내 유통되는 대추는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에서 제공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규제하고 있음. 아래 표는 일본에서 대추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홈페이지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일본 대추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크레속심메틸	1ppm	디노테퓨란	5ppm
테부코나졸	2ppm	플룩사메타마이드	0.7ppm
디메토모르프	2ppm	비펜트린	0.3ppm
펜피라자민	3ppm	페니트로티온	1ppm
펜헥사미드	3ppm	스피로메시펜	0.5ppm
아세타미프리드	5ppm	클로르페나피르	2ppm
스피네토람	0.5ppm	펜피록시메이트	2ppm
트리플루미졸	1ppm	테플루트린	0.1ppm

출처: 농사로, 일본 후생노동성(MHLW)

(다) 통관거부 사례

일본으로 대추 품목을 수출할 때,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0건이었음.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3건으로 조사됨. 일본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잔류농약이 통관 문제의 주요 사유로 나타남

[표] 일본 대추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중국산	대추(건조)	2019.07	성분(잔류농약)/ 피라클로스트로빈 0.05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	중국산	대추(건조)	2019.07	성분(잔류농약)/ 프로피코나졸 0.04ppm 검출	폐기 또는 반송
3	일본산[24]	대추(건조)	2019.07	성분(잔류농약)/ 에폭시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검출	리콜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24) 해당 건은 일본산이 원산지인 대추의 재수출건으로 확인됨

4) 표고버섯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일본 내 표고버섯 품목의 HS CODE는 표고버섯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품목별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일본 표고버섯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신선표고버섯 HS CODE	0709.54-0000	
일본 신선표고버섯 HS CODE	0709.54-00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4.3%	5%
한국 건조표고버섯 HS CODE	0712.34-0000	
일본 건조표고버섯 HS CODE	0712.34-000	
관세	1순위 WTO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12.8%	15%
한국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1000	
일본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220	
관세	1순위 RCEP 협정세율	2순위 WTO 협정세율
	7.6%	10.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일본으로 표고버섯을 포함한 주요 버섯 제품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일본 표고버섯 검역요건

품목명	표고버섯
수출요건	(-)
필요 서류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본 내 유통되는 표고버섯은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에서 제공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해당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규제하고 있음. 아래 표는 일본에서 표고버섯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홈페이지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일본 표고버섯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아이옥시닐	0.1ppm	디크로메딘	0.02ppm
아세타미프리드	0.2ppm	시할로트린	0.5ppm
아트라진	0.02ppm	디플루펜조필	0.05ppm
에티온	0.3ppm	실로마진	1ppm
킨토젠	0.02ppm	팔라티온	0.05ppm
크로티아니딘	0.05ppm	피레트린	1ppm
크로마존	0.02ppm	메티오카르브	0.05ppm
시클로시디뮴	0.05ppm	인화수소	0.01ppm

출처: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다) 통관거부 사례

일본으로 표고버섯 품목을 수출할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한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됨.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경쟁국산 제품의 통관 문제 사례는 총 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 및 가공 기준 부적합 판정이 통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표] 일본 표고버섯 통관거부 사례

순번	구분	품목	발생 기간	문제 사유	조치사항
1	중국산	표고버섯(건조)	2022.08	기타/ 제조, 가공 및 조리기준 부적합 판정(방사선 조사)	폐기 또는 반송
2	일본산	표고버섯 (조제보존처리)	2022.05	성분(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 0.02ppm 검출	리콜
3	중국산	표고버섯 (조제보존처리)	2019.11	위생(미생물)/ 발생 가능한 미생물 양성	폐기 또는 반송
4	일본산	표고버섯 (조제보존처리)	2019.10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세슘이 검출됨	리콜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5) 산양삼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한국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세부 품목에 따라 5개로 분류되나, 일본 내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하나로 통합되어 분류됨. WTO 협정세율에 따라 한국산 산양삼에는 4.3% 관세가 부과됨

[표] 일본 산양삼 HS CODE 및 관세율

<table>
<tr><td>한국 산양삼(수삼)
HS CODE</td><td>1211.20-1110</td><td rowspan="5">일본 산양삼
HS CODE</td><td rowspan="5">1211.20-900</td></tr>
<tr><td>한국 본삼(산양삼)(백삼)
HS CODE</td><td>1211.20-1211</td></tr>
<tr><td>한국 본삼(산양삼)(홍삼)
HS CODE</td><td>1211.20-1311</td></tr>
<tr><td>한국 기타(산양삼)(홍삼)
HS CODE</td><td>1211.20-1319</td></tr>
<tr><td>한국 기타(산양삼)(백삼)
HS CODE</td><td>1211.20-1219</td></tr>
<tr><td colspan="4">관세</td></tr>
<tr><td colspan="2">1순위
WTO 협정세율</td><td colspan="2">2순위
기본세율</td></tr>
<tr><td colspan="2">4.3%</td><td colspan="2">5%</td></tr>
</table>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 내 산양삼에 대한 검역요건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검역요건을 참고함

[표] 일본 인삼 검역요건

품목명	인삼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농촌진흥청 및 일본 후생노동성 내 산양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참고함. 해당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관리해야 함. 아래 표는 일본에서 인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농약 성분과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나타낸 것임. 자세한 정보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일본 인삼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에트리디아졸	0.1ppm	메탈락실	3ppm
아이소페타미드	0.6ppm	플루아지남	5ppm
피리메타닐	0.3ppm	펜사이큐론	0.7ppm
가스가마이신	0.04ppm	플리옥신디	0.1ppm
캡탄	0.05ppm	플루톨라닐	1ppm
피콕시스트로빈	0.08ppm	사이프로디닐	2ppm
펜사이큐론	0.7ppm	펜피라자민	10ppm
디메토모르프	10ppm	디페노코나졸	0.7ppm

출처: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25)]

(가) 보건기능식품으로 수출 시 주의 사항

일본으로 산양삼 수출 시, 별도의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이 아닌 신선 농산물로 분류됨. 그러나 산양삼을 건강 기능 식품, 즉, 보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으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일본 보건기능식품의 세 가지 유형별 특징과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음. 일본 '보건기능식품'은 시판 전 허가 또는 신고 요건, 허용되는 기능성 강조 문구의 표시 기준에 따라 '기능성 표시 식품(FFC: Food with Function Claims)', '영양기능식품(FNFC: 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특수보건용식품(FOSHU,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으로 분류됨

① 기능성 표기 식품(FFC): 기능성 표시 식품은 과학적 근거(임상시험, 문헌 검토 등)에 따라 건강 관련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으로, 시판 전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에 식품에 표시된 기능성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소비자청 신고 번호,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기능성 강조 문구(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된 표현 사용 불가), 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섭취 방법, 주의 및 경고 문구 및 복용량임. 또한, "소비자청(CAA)의 기능 및 안전성 평가 없음" 및 "기능성 표시 식품(機能性表示食品)"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② 영양기능식품(FNFC): 영양기능식품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지정한 '영양 기능 강조 문구(지방산 1종, 미네랄 6종, 비타민 13종)'를 사용한 식품으로, 시판 전 필요 요건은 없음. 그러나 식품에 영양 성분 정보, 영양 성분의 기능 강조 문구(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지정한 문구 사용), 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섭취 방법, 주의 및 경고 문구, 복용량, 권장 섭취 허용량 기준 영양 성분의 일일 섭취량 비중의 표시가 반드시 요구됨. 이에 더해 "해당 제품은 특수보건용식품(FOSHU)이 아니며, 소비자청(CAA)의 개별 평가를 거치지 않음"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필수로 표기해야 함

25)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③ 특수보건용식품(FOSHU): 특수보건용식품은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시판 전 일본 소비자청(CA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식품에 영양 성분 함량, 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 정보, 복용량, 섭취 방식, 권장 섭취 허용량 기준 영양 성분의 일일 섭취량 비중, 주의 및 경고 문구 표시 외에 “특수보건용식품” 표시(승인된 제품은 로고 표시 가능), 사전 승인된 건강 기능성 강조 문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필수로 표기해야 함

(나) 기능성 표시 식품(FFC) 표시 요건 및 신고 요구 사항 일부 개정

일본 소비자청(CAA)은 기능성 표시 식품(FFC)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표시 요건 및 신고 요구 사항 일부를 개정함. 2024년 9월 1일(일부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라벨링 위치, 제품 신고 기한, 신고 방식 등에 관한 것임

기능성 표시 식품(FFC)의 라벨은 제품 앞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신고 번호를 기능성 식품 표시 라벨 바로 옆에 표시해야 함. 또한 제품 신고 기한의 측면에서, 새로운 성분이 포함되는 등의 특정한 경우에는 판매 최소 120일 전까지 일본 소비자청(CAA)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기한이었던 60일에서 앞당겨진 것임. 해당 신고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신고하고 로그인 ID를 취득해야 함

Ⅳ. 베트남

1. 수출절차 한눈에 보기

1) 요약

對베트남
수출입절차

STEP 01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필요
제출서류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필요 시)
④ 수출신고필증

STEP 02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내 용 수출 품목에 대한 베트남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을 사전에 파악

STEP 03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주 체 국내 수출업체
방 법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특 징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STEP 04 수입허가 취득

주 체 베트남 수입업체
특 징 일부 품목은 베트남 수입 전 수입허가서 취득 필요
대상품목 딸기, 토마토, 감 등 생과실·일부 채소류 냉동 닭고기 등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입허가신청서 ③ 위생증명서 ④ 수출계약서

STEP 05 식품등록

주 체 베트남 수입업체
특 징 대부분의 일반식품은 자체등록 대상으로, 등록 시 제반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① 자율등록신청서
②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STEP 06 수입신고

주 체 베트남 수입업체
방 법 국경 도착 전후 30일 이내에 VANCC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완료
제출서류 ① 세관수입신고서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식품안전증명서류 ⑧ 자유판매증명서

STEP 07 수입검사

주 체 베트남 수입업체
특 징 - 물품 위험도에 따라 ① 녹색 ② 황색 ③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하며 채널별로 수입검사 내용 상이
- 수입검역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해 검역 등록(신청) 필요
제출서류 ① 검역검사등록신청서
②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③ 검사보고서 등

STEP 08 관세 납부 및 반출

주 체 베트남 수입업체
방 법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라벨링 제도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제품 책임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 제품 용량(총 중량)	• 생산일자, 유통기한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 정보 • 보관 방법 및 사용 방법
라벨 표기사항	표기 언어	•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고,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필수 라벨 내용을 담고 있는 별도의 부착물(스티커 등)도 인정함
		• 베트남 명칭이 없거나 번역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약품, 성분 등 법률이 정하는 명칭은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않고 고유명칭 그대로 표기할 수 있음
		• 글자의 크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mm 이상일 것 (단, 제품 크기가 80cm 이하인 경우 0.9mm 이상으로 표시할 것)
	제품명	•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할 것
		• 필수 기재사항 중 가장 큰 크기로 표기할 것
	제품 용량	• 숫자 혹은 개수로 명확히 표기할 것
		• 표기 단위 및 표기 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조할 것
		• 제품명에 색상, 향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첨가물·추출물·농축물에 대한 원료 함유량을 명시할 것
	원산지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은 약어로 표시해서는 안 될 것
		•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중 하나로 표기할 것
		•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표시할 것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최종 단계 가공·완성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할 것
	유통기한	•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할 것
		• ‘.’, ‘/’, ‘-’를 이용하여 구분할 것
		• ‘제조일’은 ‘NSX’, ‘만료일’은 ‘HSD’ 또는 ‘HD’의 약어로 표시할 수 있음
		•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음료 제품의 경우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음

[표]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구분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 정보	• 성분,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중량 대비 성분의 비율 또는 중량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설탕,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 1회 섭취량 또는 100g(ml)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과 권장량 대비 함량 비율(NRV)을 작성해야 함 *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24.1.1.부터 준수 필요)
		• 홍보를 위해 특정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용량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국제 코드 또는 성분명으로 작성해야 함
		• 2개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표기하는 경우 중량 대비 비중 순으로 나열함
		• 식품첨가물 이름 아래에 'Dùng cho thực phẩm(식품을 위해 사용됨)' 문구를 최소 2mm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야 함
		•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적인 표기 필요함 * 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귀리 등) 및 전분, 갑각류, 달걀(제품), 어류(제품), 땅콩, 대두(제품), 우유(유제품, 락토스, 설탕 포함), 견과류(제품), 10mg 이상 농도의 아황산염
		• 보충용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은 권장섭취량(RNI)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No.43/2014/TT-BYT) 확인 필요
	보관방법	•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함께 보관 가능 기간을 표기해야 함
	사용방법	• 제품 라벨이 10cm 미만인 제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보충 라벨 또는 설명서 형태로 제품에 첨부해야 함
	GMO 식품	• 제품에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genetically engineered food)' 문구를 표기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GMO식품의 필수 표기 정보는 별도 규정 참고 (Lawnet, Decree 111/2021/ND-CP)[26]

출처: 로넷(Lawnet)

26) 링크 : https://lawnet.vn/en/vb/Decree-111-2021-ND-CP-amendments-to-some-articles-of-Decree-43-2017-ND-CP-799DF.html

3) 인증 제도

(1) 필수 인증

인증명	VFA 적합성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위생안전국 (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제출서류	• 판정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제품 시험결과서, 품질관리계획, 제품 샘플 • HACCP / ISO22000 / GMP 혹은 기타 동등한 인증서 •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	
비용	품목당 650,000~1,650,000동(시험비 제외)	
소요기간	약 15~3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결정 → 적합성 평가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선언문 발표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신고 → 신고 접수 확인 및 공개 통보	

(2) 선택 인증

인증명	식품·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MOH/VFA) 지정 검사기관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매뉴얼 • 제조시설 관련 서류: 주소, 운영 사양, 관련 인허가 문서 • 자유판매증명서	
소요기간	약 2개월	
취득비용	제조시설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함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인증명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VietGAP, 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농장정보서 • 생산 및 관리 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목록 등
비용	약 2,000달러~6,000달러
소요기간	약 2~4개월
유효기간	2년
절차	인증 신청 → 신청 내용 검토 → 비용 견적 → 현장 검사 → 인증 결과 통보

인증명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발행 및 검사기관	정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경영검토 보고서, HACCP 기준서 및 인증서 • 공정도 및 운영 프로세스 문서, 모니터링 및 추적 자료
비용	약 2,500달러~10,000달러
소요기간	약 4~6개월
유효기간	3년
절차	서류 제출 → 인증 계약 → 계획 통보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시정 조치 → 인증 → 사후관리심사 → 갱신 심사

인증명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품질 보증 매뉴얼, HACCP 시스템 문서 • 기술 문서(생산 과정, 원료 사양, 공정 흐름도 등), 내부 감사 보고서
비용	약 2,500달러~10,000달러
소요기간	약 2~4개월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발급

출처: 각 인증기관

2. 품목별 수출 매뉴얼

1) 밤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베트남 내 밤 품목의 HS CODE는 탈각 및 냉동 여부에 따라 분류됨. 한·베트남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세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베트남 밤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미탈각밤 HS CODE	0802.41-0000	
베트남 미탈각밤 HS CODE	0802.41-1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45%
한국 탈각밤 HS CODE	0802.42-0000	
베트남 탈각밤 HS CODE	0802.42-1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45%
한국 냉동밤 HS CODE	0811.90-1000	
베트남 냉동밤 HS CODE	0811.90-0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4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베트남으로 밤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반입 시점에서 일반적인 검사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루어짐.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만 준수하면 됨

[표] 베트남 밤 검역요건

품목명	냉동밤
수출요건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위생증명서(PC)

품목명	밤
수출요건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위생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위생요건

밤을 특정하여 설정된 위생요건는 확인되지 않으나 과채류 및 견과류에 설정된 기준치가 준용될 것으로 추정됨

[표] 베트남 밤 위생요건

물질명		품목명	세부 내용
총 아플라톡신		건조 과실	10μg/kg(가공용), 4μg/kg(직접 소비용)
		기타 견과류	10μg/kg(가공용), 4μg/kg(직접 소비용)
중금속	비소	건조 과채류	1.0mg/kg
	카드뮴	과채류	0.05mg/kg
	납	과채류	0.1mg/kg
		건조 과채류	2.0mg/kg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연구소(FSI)

2) 감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베트남 내 감 품목의 HS CODE는 감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베트남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두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베트남 감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신선감 HS CODE	0810.70-1000	
베트남 신선감 HS CODE	0810.70-0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37.5%

한국 건조감 HS CODE	0813.40-1000	
베트남 건조감 HS CODE	0813.40-9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45%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베트남으로 감을 수출할 때 검역요건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함. 따라서 수출 품목의 특징을 고려하여 검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표] 베트남 감 검역요건

품목명	신선감
수출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필수(재배지 검역(3회) 필요)
	베트남 우려 병해충 관리프로그램에 따른 재배지 관리
	포장상자 외부에 “For Vietnam”,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표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및 아래 부기사항 기재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s fruits (Diospyros kaki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필요 서류	식물검역증명서

품목명	건조감
수출요건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위생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3) 표고버섯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베트남 내 표고버섯 품목의 HS CODE는 표고버섯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베트남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세 품번 모두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베트남 표고버섯 HS CODE 및 관세율

한국 표고버섯 HS CODE	0709.54-0000	
베트남 표고버섯 HS CODE	0709.54-0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22.5%

한국 건조 표고버섯 HS CODE	0712.34-0000	
베트남 건조 표고버섯 HS CODE	0712.34-0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기본세율
	0%	45%

한국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1000	
베트남 표고버섯 (조제, 보존 처리) HS CODE	2003.90-90	
관세	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2순위 RCEP 협정세율
	0%	28%

(2) 검역

(가) 검역요건

베트남으로 표고버섯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나 특정 수출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반입 시점에서 일반적인 검사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루어짐.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만 준수하면 됨

[표] 베트남 표고버섯 검역요건

품목명	표고버섯
수출요건	식물위생증명서(PC) 제출
필요 서류	식물위생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4) 산양삼

(1)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한국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세부 품목에 따라 5개로 분류되나, 베트남 내 산양삼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이 인삼 품목 2개로 분류됨. 한·베트남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이 0%임. 해당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 베트남 산양삼 HS CODE 및 관세율

<table>
<tr><td rowspan="2">한국 산양삼(수삼)
HS CODE</td><td rowspan="2">1211.20-1110</td><td rowspan="3">베트남 인삼
(신선하거나 말린 것)
HS CODE</td><td rowspan="3">1211.20-10</td></tr>
<tr><td rowspan="2">한국 본삼(산양삼)(백삼)
HS CODE</td><td rowspan="2">1211.20-1211</td></tr>
<tr><td rowspan="2">한국 본삼(산양삼)(홍삼)
HS CODE</td><td rowspan="2">1211.20-1311</td></tr>
<tr><td rowspan="3">베트남 인삼(기타)
HS CODE</td><td rowspan="3">1211.20-90</td></tr>
<tr><td>한국 기타(산양삼)(홍삼)
HS CODE</td><td>1211.20-1319</td></tr>
<tr><td>한국 기타(산양삼)(백삼)
HS CODE</td><td>1211.20-1219</td></tr>
<tr><td colspan="4">관세</td></tr>
<tr><td colspan="2">1순위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td><td colspan="2">2순위
기본세율</td></tr>
<tr><td colspan="2">0%</td><td colspan="2">7.5%</td></tr>
</table>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2) 검역

(가) 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 내 산양삼에 대한 검역요건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인삼에 적용되는 검역요건을 참고함. 인삼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 및 식물위생증명서 첨부가 필수임

[표] 베트남 인삼 검역요건

품목명	인삼
수출요건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받고, 식물위생증명서(PC)를 첨부하여 수출 가능
필요 서류	식물위생증명서(PC)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3)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

베트남으로 산양삼 수출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함.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품검역정보에 따르면 잎과 줄기가 포함된 신선 인삼 새싹삼은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없음. 산양삼은 4년 이상의 수삼의 표피를 벗기거나 그대로 일광건조 또는 열풍 건조한 삼이므로 잎과 줄기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으나, 수출이 금지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잎과 줄기를 제거하는 것이 권장됨. 베트남에서 인삼은 43/2014/TT-BYT 규정에 따라 식품 중에서도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에 해당하여 사전에 식품을 등록해야 함

[표]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구분	세부 내용
1단계: 서류 제출	• 베트남 식품위생안전국(VFA)에 필수 서류 제출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제품라벨, ③제품 시험결과(식품위생허가서), ④제조사의 제품 사양, ⑤제조사의 성분 분석표, ⑥제조사의 효능 증명서, ⑦GMP, HACCP, ISO 22000 등 인증 ⑧제품 사진과 실물 샘플 2개 ⑨로고(상품) 증명 서류
2단계: 접수증 발급	• 서류 접수 후 식품위생안전국(VFA)에서 신청자에게 접수증 발급
3단계: 요청 시 보완서류 제출	•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보완 요청
4단계: 심사 단계 (약 10일 소요)	• 필수 서류 접수 후 10근무일 이내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후 10일 내 심사 요청서 제출 및 승인 대기
5단계: 심사 결과 발표 및 승인	• 등록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서류 보관

출처: 베트남 보건부

3장 수출지원사업 소개

I. 정부지원사업

Ⅰ 정부지원사업

1.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

1) 글로벌 선도조직 육성

구분	내용
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조직화하여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임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해당 품목 수출액 비중이 국가 전체의 3% 이상)
지원내용	• 품질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소요비용
지원기준	•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신청 사업자 평가·선정 → 사업추진 → 중간평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지원기간	• 선정사업자는 연단위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2)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구분	내용
목적	• 품목별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자체적인 수출상품관리, 공동마케팅 추진, 수출질서 확립 등을 유도하여 공동협의체 의식 고취
지원대상	• 임산물 품목별 수출협의회 *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조경수, 분재, 합판보드, 목제품, 임업기계장비
지원내용	• 해외 수출상담회, 홍보판촉, 컨설팅, 정보조사 등 공동마케팅 전반 소요비용
지원기준	•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통역요원 고용, 정보조사 등 공통 운영비는 100% 지원
지원한도	• 수출협의회별 50백만원 내외 * 단, 수출협의회별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지원절차	• 사업신청(협의회) → 사업 검토 및 승인(aT) → 사업추진 → 결과 보고 및 정산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위탁하여 추진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3) 수출 통합조직 육성

구분	내용
목적	• 고품질 임산물 수출을 위해 전체 수출임가·수출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가 상호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들의 해당 품목 수출액이 국가 전체의 2/3 이상인 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 품질개선 및 안전성 관리, R&D 연구, 물류개선, 공동 마케팅 등 • (조직화 및 운영) 수출 전문조직 결성, 생산 품질관리 등
지원기준	•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한도	• 수출통합조직별 180백만원 내외
비고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사무국)에 위탁 운영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4) 임산물 글로벌특화시설 확충사업

구분	내용
목적	• 수출 시설·장비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임산물 규격·품질·안전 관리로 임산물 수출 확대 도모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비 조성
지원규모	• 총 사업비 20억 또는 10억(국고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사업기간은 2년으로, 매년 5억 또는 10억 원 지원(자부담 30% 포함)
선정방법	• 시·도를 통한 업체모집 공고(3~4월),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평가·선정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사업자 → 시·군 → 도 → 한국임업진흥원) → 선정평가 → 시설 조성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원소득지원실(02-6393-2565) ☎ 지역별 시·군 산림부서

5) 수출 컨설팅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수출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체별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임산물(단기임산물, 목재, 임업기계장비) 수출업체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 해외진출 컨설팅, 현장코칭, FTA특혜관세 교육 등 • (목재·임업기계장비) 수출 역량진단, 통관애로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절차	•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한 수출정보 제공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조치
비고	• 품목별 컨설팅(현장 코칭) 담당 기관으로 문의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단기임산물)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02-6393-2622) (목재)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02-6393-1436) (임업기계장비)

6)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구분	내용
목적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수출유망 업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기반 마련 및 수출 조직 육성
지원대상	• 목재제품 및 단기임산물 생산자·수출자
사업내용	• 수상업체에 대해 차년도 수출마중물 사업 지원,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조건	• 산림청 소관 임산물 HSK코드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 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가공한 제품
지원절차	• 공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시상식 → 수출지원 및 사후관리
공모기간	• 공모시기(2024년) : 4~5월
모집방법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5)

2. 글로벌 판로 개척 사업

1)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구분	내용
목적	• 우수바이어 발굴과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대상	• 임산물 및 임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종합 홍보관 운영) 참여품목 전시 및 홍보, 시연·시식, 바이어 상담 알선 등 •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임차비, 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지원기준	• (종합 홍보관 운영) 임차비, 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 항공료·숙박비 미지원, 운송·통관비 한도 150만원, 업체 자부담 1백만원 •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업체별 6~7백만원 한도 * 항공료·숙박비, 통역, 교통비 미지원
지원절차	• 계획수립 →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선정 → 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모집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2) 국제 목재박람회 참가지원

구분	내용
목적	• 우수바이어 발굴과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목재류 수출 확대
지원대상	• 목재 및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목재·건축 관련 박람회 참가 및 종합 홍보관 운영
지원기준	• 박람회 홍보관 임차비, 홍보부스 디자인비, 운송·통관비, 통역지원 등 * 항공료·숙박비 미지원
지원절차	• 계획수립 →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선정 → 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02-6393-2622)

3) 바이어 초청

구분	내용
목적	•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을 통한 영세 국내 수출업체의 신규 거래선 발굴 • 해외 바이어의 현장방문을 통한 한국산 임산물 이미지 제고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등)
지원내용	• 항공 및 숙박 등 지원 (방문업체별 바이어 1인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및 숙박비)
지원기준	• (공사) 왕복항공료(이코노미) 및 숙박비(100만원, 1박당 20만원 한도) 내 실비 • (조합) 왕복항공료(이코노미) 및 숙박비(최대 2박, 50만원 한도)의 80%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 해외바이어 선정 → 국내수출업체 모집(4월) → 상담매칭 → 행사개최 → 사업정산
모집방법	• 바이어 : 해외 aT센터를 통한 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국내업체 : aT 홈페이지, 수출협의회 안내 등을 통해 모집 후 바이어 관심품목을 선정하여 매칭
비고	• 개별 바이어 초청사업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위탁 추진 • BKF(Buy Korean Food) 연계 종합상담회 및 수시바이어 초청은 aT에서 추진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4) 해외판촉행사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해외 유통매장 연계 판촉 행사를 통해 주요 해외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진출 등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지원대상	• 해외 수입·유통업체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촉 :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시식 행사비 등 • 온라인 판촉 : 해당 온라인 매장 판촉 관련 비용(입점비, 쿠폰, 배송료 등)
지원기준	• 지원한도(최대 50백만원) 내 행사 제비용의 80% • 사업의무액 : 지원액의 2배이상
지원절차	• 계획수립 및 판촉지역 선정 → 업체 신청접수 → 업체선정 → 판촉전 개최 →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5) 수출상품화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수출 확대 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상품 개발부터 해외시장 정착까지 단계별 세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상품 육성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유망제품 개발·수출이 가능한 수출업체 •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현지 프로모션을 통한 상품화가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3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상품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입·정착까지 지원 * (1단계) 상품개발 → (2단계) 시장 진출 → (3단계) 시장 정착
지원기준	구분 / 1단계(1년차) / 2단계(2년차) / 3단계(3년차) 지원내용 / 상품개발·개선 / 해외시장 진입 / 해외시장 정착 지원한도 / 20백만원 / 20백만원 / 20백만원 수출의무액 / - / - / 수출목표액[27]×30%
지원절차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약정체결 → 중간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6) 해외홍보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해외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한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전파하여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실수요층 창출로 수출확대 도모
사업내용	〈예시〉 지역 / 홍보사업명 / 주요 타겟층 / 품목 중국 / 한국산 분재 기내잡지 광고 / 중산층 소비자 / 분재 홍콩 뉴욕 / K-Food Fair연계 한국산 임산물 소비자 체험 홍보행사 / 일반소비자 관광객 / 밤, 반건시, 표고버섯 등 대만 / 한국산 임산물 소비자체험 홍보행사 / 일반소비자 / 〃 오사카 / 한국 임산물 산지방문 미디어투어 광고 / 일본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 / 〃 파리 / 한국 임산물 수출홍보 사이트 개설 / 일반소비자 / 아이스홍시, 대추, 오미자
추진방법	• 지역별 해외aT센터 및 전문업체 활용 추진
추진절차	• 해외aT센터 사업계획 수립 → 검토 · 승인 → 행사 추진(홍보 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27) 수출목표액: 25천불 또는 전년실적×110%

7) 해외물류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해외 공동물류센터 보관료, 샘플 통관·운송비, 해외 냉장냉동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해외공동물류센터) 한국산 임산물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 (샘플 통관·운송비 / 밤·감 냉장냉동고 임차)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보관료 등 지원 • (샘플 통관·운송비)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통관·운송비 • (밤·감 냉장냉동고 임차) 현지 매장 내 냉장·냉동고 임차비(감), 보관료(밤) 지원
지원기준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 내 80% •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한도 내 90% • (밤·감 냉장냉동고 임차) 지원한도 내 80%
모집방법	• (해외공동물류센터) 관할 aT 해외지사에 신청 • (샘플 통관·운송비)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신청 • (밤·감 냉장냉동고 임차)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통해 신청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8) 우수임산물 패키지 지원

구분	내용
목적	• 수출기업이 필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 유망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지원내용	•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판촉, 바이어초청 등 메뉴별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사업을 자율적 추진
지원기준	• (초보) 임산물 수출실적 5만불 미만 • (성장) 임산물 수출실적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 (고도화) 임산물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기준
지원한도	• (초보) 30백만원 (성장) 50백만원 (고도화) 100백만원 *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모집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모집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061-931-0826)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임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수출 계획이 있는자(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
지원기준	•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국고 30%, 자부담 70%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제외
추진절차	• 신청 제출서류 :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당해년도 수출계획서, 기계장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기계장비 주문(제작) 및 제품인수·설치 → 설치완료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기계장비 설치 현지실사 → 사업비 지원
지원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공고
기타	• 기계장비 지원 우선순위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최근 2년간 연속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2)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중 포장디자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한 업체
지원기준	• 최근 2개년도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우선 지원 • 수출확대 가능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사업과 연계하여 선정 • 국고 70%, 자부담 30% * 업체별 7백만원 한도
추진절차	• 신청 제출서류 : 임산물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 디자인개발 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디자인 개발업체 신고 필증 등 * 포장디자인 제작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협회에 등록 필한 업체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디자인 제작사에 주문(제작) 및 개발완료 →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사업비 지원 * 관련서류는 디자인 업체의 자부담 금액 지급내역 포함 제출
지원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공고
기타	• 실적확인 : 계산서, 디자인 이미지 CD 및 개발 완료된 포장 제품 *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3)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밤 생산농가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생밤 생산농가 • 수출용 밤, 감, 표고버섯, 대추, 건강임산물 생산 농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이력 등록 관리
지원기준	• 밤·감·표고버섯·대추·건강임산물 kg당 200원씩 지원
추진절차	•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는 수출계획서와 신청서를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 상반기중 수출계획 등을 검토하여 생산농가별 물량 배정
지원방법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수출업체별 구입내역 및 사업결과서를 접수 및 검사
기타	• 실적확인 - 사업완료 후 산림조합중앙회에 정산자료 제출(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운영보고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 - 수출업체의 구입확인증, 생산자의 생산이력 등록확인증 및 제반 영수증 확인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4) 수출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당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제조자, 임가 포함) - 목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20백만원 한도내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 소요비용의 70% 지원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해외 각국에 임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당해연도 수출계획,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 이외에도 수출증대 가능성 높은 업체 선정·지원
지원절차	•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는 대행 또는 자체 해외인증 추진 • 선정업체는 인증완료 후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계좌에 송금
지원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공고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5) 수출 검역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생밤 미국 수출업체 및 분재·조경수 수출업체
지원내용	• 미국 수출용 생밤의 국내 사전검역비(검역관 초청 및 체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미국 현지 검역비 • 수출용 분재 및 조경·관상수의 국내검역을 위한 검역관 초청경비 지원
지원방법	• 검역을 희망하는 생산자조합은 품목별 사업협력기관에 검역 신청 * 사업협력기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밤), 한국분재조합(분재), 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
지원기준	• 국내 사전검역 100%, 미국 현지검역 70%
추진절차	• 사업 협력기관은 계획서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지원계획서, 검역계획서, 신청예산 산출내역서 • 사업협력기관은 정산잔액 발생하는 즉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기타	• 선집행후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 • 검역계획 보고 : 사업협력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6)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임산물 수출 계획(신용장수취, 계약서 등)이 있는 업체 - 지원품목 : 수출 임산물 전반(HS코드 기준)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검사, 영양성분검사, 중금속검사
지원기준	• 임산물 수출업체 중 임산물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
지원절차	•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신청
지원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 검사지정 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으로 신청
기타	• 신청서류 - 수출임산물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검사증명서(사본), 검사비납부영수증(사본), 검사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등 증빙자료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

7) 수출보험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당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목재, 석재류 제외) • 수출협의회 가입 또는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지원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지원기준	• 환변동보험료의 95%, 단기수출보험료의 90% 지원 * 지원한도액 : 업체당 10백만원
지원절차	•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보험가입 신청 - 신청서 안내, 신청서류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지원 대상 확인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무역공사 통보 • 수출업체 보험가입 자부담분(5~10%) 납부(수출업체→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방법	• 수시(당해년도 2월 공고 후 수시접수)
기타	• 실적확인 - 수출보험 지원비의 실적 확인은 제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8) 관상식물 인공용토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수출계획이 있는 분재·조경수 등 관상식물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
지원내용	• 분재·조경수 등 수출을 위해 사용한 인공용토 구입비
지원기준	• 업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청금액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절차	• 신청 제출서류 :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신청서 -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지원기간	• 연중 신청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9)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융자)

구분	내용
목적	• 단기임산물 및 목재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단기임산물 또는 목재류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 수출실적, 향후 수출전망 등을 기준
지원내용	• 원재료 구입비의 80%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15억원 이내 • 금리 : 고정금리(단기임산물 2%, 목재류 3%) 또는 변동금리
지원방법	• 매월 신청접수 -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역산림조합에 신청 및 서류제출 - 사업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 원자재 구입관련 계산서 사본 및 증빙자료 등
비고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의무 이행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참고문헌]

■ 참고 자료

1. 산림청, '임산물 수출 종합가이드 핸드북', 2024
2. KOTRA.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9.04
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년 수출 성공을 위한 수출 실무가이드북', 2024.04
4.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수출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
5. 파이낸셜뉴스, '美 통관 거부 1위 한국 식품은 바로 '이것'…'K-푸드' 한류에 찬물', 2024.09
6. KPI뉴스, '미국, 한국産 뿌리삼 수입 허가', 2024.06
7. KATI농식품수출정보, '[미국]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으로 수출 가능', 2024.07
8. 한국임업진흥원, '목재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전략 연구', 2024.11
9. KOTRA해외시장뉴스,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반 상승하는 목재 시장', 2018.06
10.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美 환경청, 합성목재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2017.06
11. 산림청,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연구', 2016.11

■ 참고 사이트

1. 미국 식품의약국(FDA) (www.fda.gov)
2.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customs.go.kr)
3.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4. 농사로 (www.nongsaro.go.kr)
5. KATI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6.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JFCRF) (db.ffcr.or.jp)

수출초보업체를 위한

임산물 수출가이드북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산림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전화	1588-3249